북한법제분석 96-1

北韓의 地下資源法制

1996. 5.

研究者 : 金 昌 奎(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Ⅰ. 序 論 ····· 5

Ⅱ. 北韓의 地下資源의 賦存現況과 開發政策 ····· 7

1. 북한의 지하자원의 부존현황 ····· 7
2. 북한의 지하자원의 관리체계 ····· 8
3. 북한의 지하자원의 개발정책 ····· 11

Ⅲ. 北韓의 地下資源法制의 構造와 沿革 ····· 13

1.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구조 ····· 13
2.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연혁 ····· 16
   (1) 북한정권수립기 ····· 16
   (2) 전쟁복구기 ····· 18
   (3) 중공업육성기 ····· 20
   (4) 대외개방추진기 ····· 22

Ⅳ. 北韓의 地下資源法의 分析 ····· 25

1.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구성 ····· 25
2.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입법배경 ····· 25
3.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제정의의와 평가 ····· 28
4.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내용 ····· 30
   (1) 지하자원법의 기본원칙 ····· 31
   (2) 지하자원의 탐사 ····· 33
   (3) 지하자원의 개발 ····· 36

(4) 지하자원의 이용 ····· 40
(5)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제재 ····· 42

Ⅴ. 南北韓 地下資源法의 比較 · 分析 ····· 45

1. 우리나라 지하자원법제의 구조와 연혁 ····· 45
2.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우리나라 광업법의 비교 · 분석 ····· 47
(1) 적용범위 ····· 47
(2) 광업권의 존재 ····· 47
(3) 광물자원탐사의 주체와 절차 ····· 48
(4) 광물자원매장량의 관리제도 ····· 48
(5) 광물자원개발의 주체와 절차 ····· 48
(6) 광물자원의 이용규제 ····· 49
(7) 광물자원의 보호와 감독 ····· 49
(8) 법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 50

Ⅵ. 結 論 : 南北韓 地下資源共同開發의 法制的 檢討 ····· 51

1. 남북한의 경제교류현황 ····· 52
2.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문제점과 공동개발의 유의사항 ····· 53

附 錄 : 社會主義國家의 地下資源法 ····· 55

Ⅰ. 序 論

북한은 '유용광물(有用鑛物)의 표본실'로 알려질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지질학적 부존조건으로 인하여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풍부한 부존지하자원을 토대로 일찍부터 북한은 지하자원개발사업을 국가산업정책의 기초로 삼아 주력하여 왔다. 특히, 1984년 합영법제정 이래로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국내산업의 원료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대상으로서 지하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1993년 4월 8일에 기존 지하자원관계법령을 종합화·체계화하여 지하자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물자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지하자원개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은 지하자원수송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사업은 공동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경제개방조치를 취한 1988년 10월부터 1991년까지의 남북한 광물교역량을 보더라도 그 3년간의 교역량이 북한교역국 가운데 네번째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그후 1991년 말 남북한간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발효)」의 부속합의서("「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채택·발효) 제1장 제1조에서 광물자원의 남북한공동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 이후로 남북한간의 정치적 갈등과 북한내부의 정치·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남북한관계가 긴장관계로 전환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급속도록 냉각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멀지않은 시기에 남북관계는 정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조감할 때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인 현재의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민족의 동질성확보를 위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 기대된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북한 지하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문헌으로서는 「서권혁, "채취공업과 인민경제발전",

천리마 제416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채굴공학 제123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지질탐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지질과학 제173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 나가자", 채굴공학 제119호(1993.1), 과학기술출판사」 등이 있고, 국내문헌으로서는 한국자원연구소 변정규의 「북한의 금속광물자원 현황분석 연구(1992)」와 「북한의 비철금속광물자원 현황분석 연구(1993)」,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북한의 지하자원법 및 투자관련법령(1994.12)」 등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현황분석 및 북한의 지하자원법을 간략히 해설·소개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민족자원인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돌리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의 공동개발참가에 있어서는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질 남북경제협력단계에 대비하고,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에 공동참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하자원법제를 분석·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자원공동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법제적 기초자료로서 북한의 지하자원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北韓의 地下資源의 賦存現況과 開發政策

1. 북한의 지하자원의 부존현황

북한지역은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광물만도 중석(텅스텐)·몰리브덴·중정석·운모·흑연·금·마그네사이트·형석 등의 8종류에 이르고, 남한과 비교하여 금·은광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70%이상과 철광의 90%이상이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1] 특히, 마그네사이트의 경우에는 남한의 경우 전혀 생산되지 않는 반면에 북한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유용광물의 표본실'로 알려질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지질학적인 부존조건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 알려진 북한의 부존광물은 약 400여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유용광물만도 약 200여종이 산출될 뿐만 아니라 북한 전지역의 약 80%가 유용광물분포지역에 해당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지하자원의 부존지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주요지하자원의 부존지역[2]

광 물 명	주요 매장지역
철	무산, 개천, 재령, 은율, 덕현, 이현, 덕성, 허천
석 회 석	마동, 회령, 고무산, 이원
무 연 탄	고원, 문천, 증산, 혜산, 개천, 강동, 천내, 평양
유 연 탄	은덕, 아오지, 샛별, 회령, 종성, 안주, 봉산, 영흥
갈 탄	금야, 함흥, 안주, 봉산
흑 연	김책, 성진, 재령
연 및 아연	검덕, 용운, 웅진, 성진
금 및 은	성흥, 운산, 대유동, 웅진, 삭주, 수안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년~1993년), 1994, 357면.

2)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35~36면.

동	화평, 중강, 갑산, 수안, 단천
우라늄	웅기, 금강, 김천
마그네사이트	단천, 용양, 남계, 길주, 김책
망간	청진, 김책, 철원, 김화
크롬	나진, 용연
니켈	나진, 단천, 은율, 김화
코발트	화령, 단천, 창도
몰리브덴	장진, 웅진, 부전, 장수, 종성, 어랑진, 경원
알루미늄	평양, 용강, 강서, 증산, 길주, 평강, 김화, 의주
인회석	단천, 김책, 길주, 평원
운모	길주, 장수, 북청, 순안, 벽성
수은	평양, 증산
석면	광천
규석	장연, 낙연, 웅진, 몽금포
고령토	청진, 경성, 보천, 평양

2. 북한의 지하자원의 관리체계

북한의 헌법상 국가조직은 중앙에 국가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을 중심으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또는 휴회중의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회의'(또는 휴회중의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갖추고 있어 형식상 권력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3]와 경제관리원칙[4]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5]를

3) 북한의 생산수단의 소유는 국가소유가 원칙이다. 물론, 북한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국가와 협동단체에 허용하고(헌법 제20조),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24조).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동시에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헌법 제21조),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국가소유)로 전환시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헌법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두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로서 주석을,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요임무로서 국가정책과 그 집행대책의 수립,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가 지도 · 통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국가조직 가운데 지하자원관리와 관련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무원이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는 부총리, 부장(위원장)들과 그 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의 정무원은 1990년 5월의 제9기 내각 출범이래로 특별한 부서개편없이 1995년 12월 현재 총 41개부처로서 13개 위원회, 22개 부, 1개 원, 1개 은행, 2개 총국, 2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이러한 정무원 가운데 지하자원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석탄생산을 관장하는 석탄공업부, 일반광물자원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개발부와 광업부 등이 있으며, 기타 유관부서로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을 담당하는 금속공업부, 국가전력사업을 관장하는 원자력총국과 전력공업부 등을 설치하여 북한내 에너지와 자원산업에 관련된 국가계획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관리 조직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켜야 한다(헌법 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의 소유형태는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의 경제관리원칙은 당정치사업의 우선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원칙,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원칙, 독립채산제의 실시원칙을 말한다.

5)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는 경제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북한은 정무원 산하에 국가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당의 정책을 반영한 경제계획을 수립 · 집행 · 감독하도록 하고, 또한 정무원 산하의 각 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계획수치를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며, 하부조직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

6)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94면.

북한의 지하자원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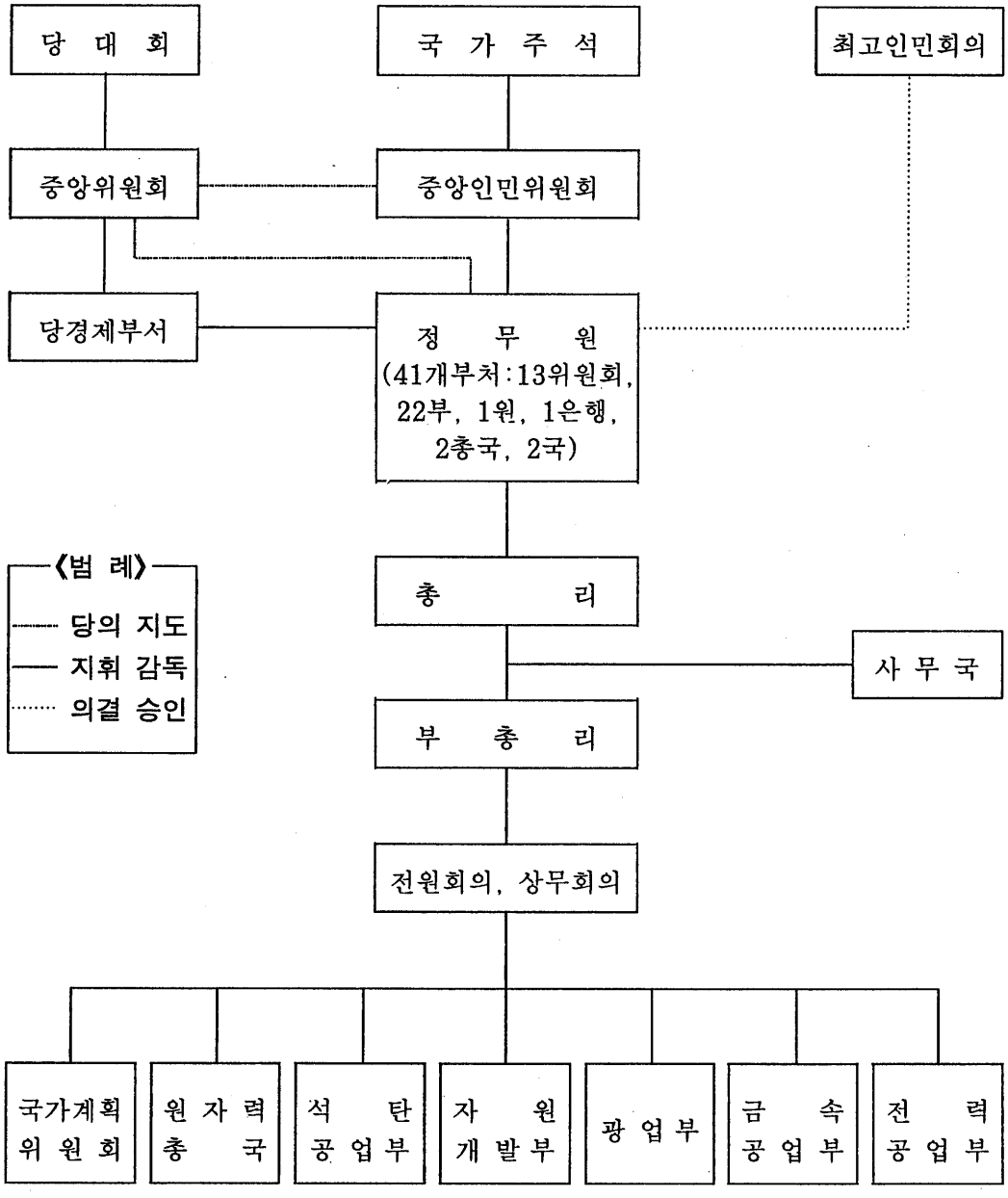

3. 북한의 지하자원의 개발정책

북한은 풍부한 부존지하자원을 토대로 일찍부터 지하자원개발사업을 국가산업정책의 기초로 삼아 주력하였다. 특히, 1950년대이후 전후복구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수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또한 국내공업발전을 위하여 「광업발전3대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지하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 임업, 어업 등을 채취공업이라 하고, 이러한 채취공업이 가공공업 보다는 시간적 · 순서적으로 먼저 발전되어야만 가공공업에 연료와 원료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공업화정책을 시행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7]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정책은 1970년대의 경제적 실패와 대외적인 국제환경의 변화(소위 '데탕트'시대의 도래)로 인한 경제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요한 국가경제정책 사항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지하자원 및 이것을 원료로 하여 정광 및 제련된 각종 비철금속, 그 제품의 대외수출액이 1991년 이래로 북한의 전체수출액 30~40%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 외화획득의 주요수출품으로서 지하자원 및 관련제품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60년말까지 원조 · 차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종래의 군비확장을 위한 중공업우선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하여 과도한 외채의 도입을 초래하였고, 또한 소련과 중국의 원조는 한계에 도달하여 그 지원액이 감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수행의 실패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로는 외채의 지불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은 서구자본주의

---

7) 북한의 공업화정책에 있어서 채취공업의 우선화정책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다. 채취공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최근의 북한문헌으로는 「서권혁, "채취공업과 인민경제발전", 천리마 제416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채굴공학 제123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지질탐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지질과학 제173호(1994.1), 과학기술출판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 나가자", 채굴공학 제119호(1993.1), 과학기술출판사」 등이 있다.

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 · 기술의 도입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때 마침 중국이 1979년부터 경제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비롯한 일련의 외자도입법령을 제정 ·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자극을 받아 북한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0호)」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8] 이러한 서구자본주의국가의 자본 · 기술을 유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희망분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분야의 투자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이 용이하고,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된 자원으로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8)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북한법제 94-1), 1994」를 참조.

Ⅲ. 北韓의 地下資源法制의 構造와 沿革

1.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구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는 북한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정무원이 제출한 지하자원법을 1993년 4월 8일에 심의 · 채택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하자원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하자원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고 개발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새 조선 건설의 첫 시기부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원료, 연료기지를 꾸리는 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우리나라는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는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고 개발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이 부문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하자원법을 채택하며, 정무원에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위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지하자원을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 · 장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일찍부터 지하자원개발을 국가산업정책의 기초로 삼아 주력하여 왔으며, 특히 풍부한 부존지하자원을 중요한 수출상품 또는 국내산업발전의 중요한 원료로 취급하여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국가의 지휘 ·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제는 1993년 4월 8일 「지하자원법」이 제정 · 공포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지하자원개발정책과 더불어 「석탄관리령(1946.5.7)」, 「연료개량 · 증산 및 수송력증강에 관한 결정서(1946.11.23)」, 「지하자원, 산림자원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1947.12.22)」, 「지질탐사사업을 전 인민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1957.1.4)」,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

여(1991.7.5)」, 「국가지하자원보호관리규정(1991.8.20)」 등의 개별법령과 「토지법(1977.4.29)」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산재되어 있었다.[9)]

결국, 북한의 지하자원법제는 북한의 헌법정신[10)]에 비추어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1993년 4월 8일에 제정된 「지하자원법」에 의하여 종합체계화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북한지역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9) 북한의 「토지법(1977.4.29)」은 토지보호와 관련하여 국토건설총계획의 내용에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를 포함하도록 규정함(동법 제17조 제6호)과 아울러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동법 제41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 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건설법(1993.12.11)」도 이러한 토지법의 규정을 수용하여 건설총계획의 원칙으로서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함(동법 제11조 제7호)과 아울러 건설설계와 관련하여 "건설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설계 기관, 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하고,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의 기술과제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지하자원탐사자료 또는 준공시험공장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의 「형법(1987.2.5)」은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 대로 캐여 국가에 엄중한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동법 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10)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북한에 있어서 모든 규범의 최상위규범이 되고 있다.

11)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지하자원법」초안을 보고한 정무원 부총리겸 대의원 홍성남은 "새로 작성하여 본 회의 심의에 제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분야에서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정책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용되여오던 규정들의 주요내용들을 현실발전에 맞게 보충하고 종합체계화하고 있습니다(민주조선, 1993.4.9., 3면)"라고 한 발언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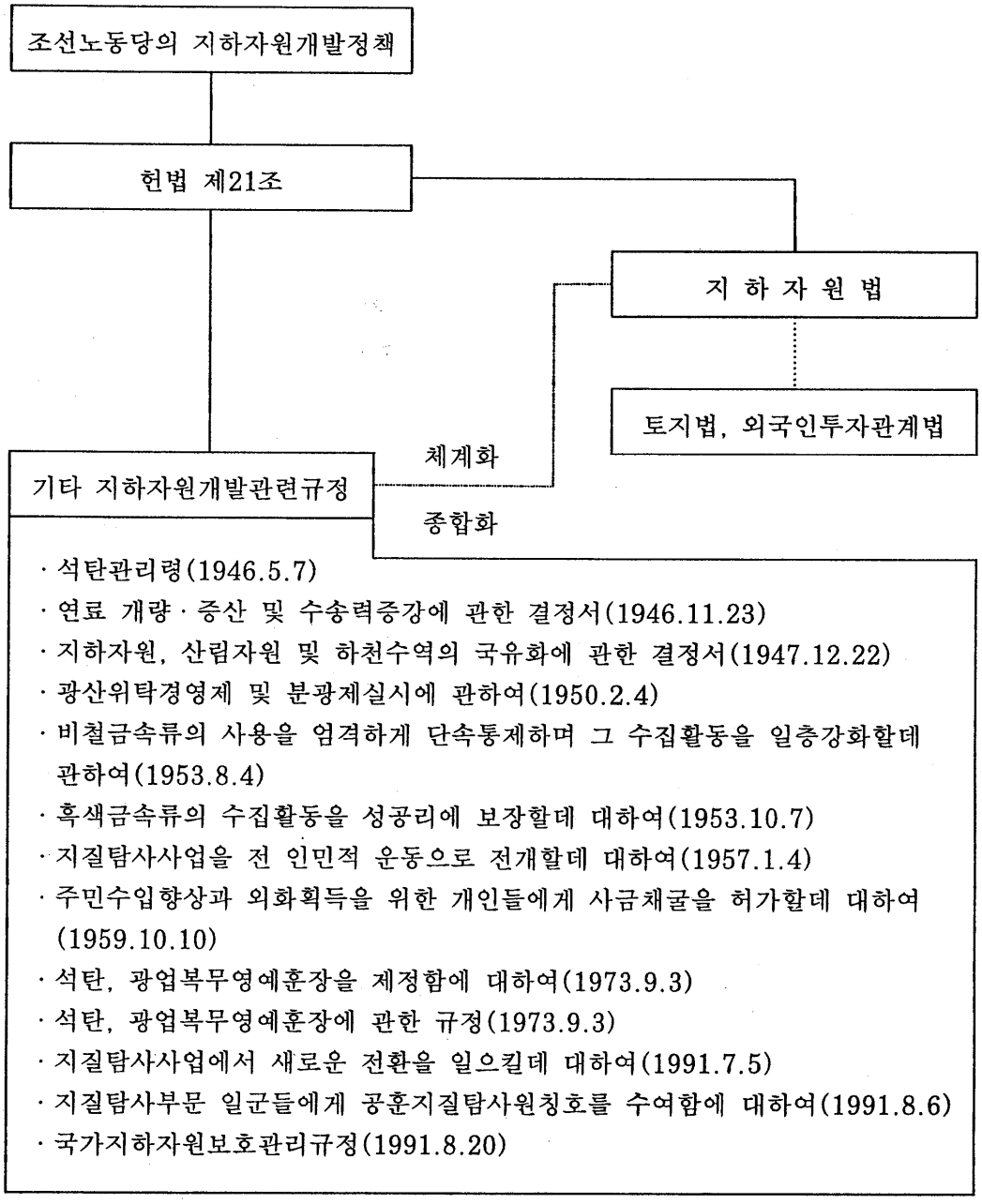

2. 북한의 지하자원법제의 연혁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정책에 따른 북한지하자원법제의 연혁과 그 주요법령의 내용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정권수립기

북한정권수립기에는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날 자본주의적 생산력발전이라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숙련된 공업기술자와 기업경영자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후퇴하면서 북한의 공업시설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공업은 일제의 유산·폐허와 같은 산업시설의 복구가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북한은 먼저 해방직전의 산업시설복구와 함께 일본잔재의 제거,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12] 그 구체적 조치로서는 김일성의 「20개조정강(1946.3.23)」에 근거한 토지개혁의 법령으로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13]」 등을 제정·시행하였고, 중요산업의 국유화법령으로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8.10)」(이하,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라고 한다) 등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북한공업은 1946년 8월의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하여 사회주의화된 것이 1946년말 현재 공업생산의 72.4%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개인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4] 이것은 김일성이 발표한 1946년 10월 4일의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에서도 알 수 있다.

---

12) 북한의 헌법과 입법제정사, 그리고 입법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북한법제분석 94-2), 1994」을 참조.

13)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일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지주(5정보이상 소유)의 토지, 소작을 주고 있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고, 또한 산림·관개시설·과수원 등과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의 토지개혁은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절하여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다.

14) 권오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351면.

그후, 북한은 1947년 제1차 1개년계획과 1948년 제2차 1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경제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제1차 2개년계획(1949~1950)의 수행으로 공업총생산량이 1946년에 비하여 3.4배로 성장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은 모든 공업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15]

북한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이 당시 「석탄관리령(1946.5.7)」, 「연료개량·증산 및 수송력증강에 관한 결정서(1946.11.23)」, 「지하자원, 산림자원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1947.12.22)」,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실시에 관하여(1950.2.4)」 등의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석탄관리령」은 ①기존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장의 관할하에 석탄관리국을 두되, ②북부조선에는 평양에 평안도와 황해도를 소관하는 서선석탄관리국, 청진에 함경북도를 소관하는 함북석탄관리국, 고원에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소관하는 함남석탄관리국을 설치하고, ③석탄관리국은 소정지구내의 국유탄광부속공장 및 연탄공장(이하, 기업이라고 약칭) 등의 사업을 관리하며, ④석탄관리국장은 산업국장이 결정한 생산책임량의 완수와 소관 각 기업장의 경리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⑤각 기업장 책임자는 관리국장이 명령하는 생산량의 완수와 경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석탄관리국장의 명령에 의한 일 기업장이 단독 또는 수개기업이 연합하여 경리경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⑥석탄관리국장은 국무의 통리와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석탄관리국장·차장·기사장은 산업국장이 임명하고, ⑦석탄관리국은 산업국의 수급계획명령에 의하여 생산품을 처분하며, ⑧석탄관리국장은 산업국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국 및 각 기업장의 책임자의 임명과 이동, 직제와 정원 및 직원급여규정의 제정, 매년도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생산품판매가격의 결정과 소관지구내 민간기업장의 매수, 규정에 따른 관리국장의 명령사항, 기타 산업국장이 명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⑨석탄관리국장은 매기의 운영방침과 예결산서를 산업국장에게 체출하여야 하며, ⑩각 기업장 책임자는 석탄관리국장에게 매월 사업보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⑪산업국장은 필요에 의하여 본 령에 의한 산업국장의 권한일부를 도인민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료개량·증산 및 수송력증강에 관한 결정

15)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5면.

서」는 석탄관리국중에서 서선석탄관리국관내의 각 기업장의 사업을 개선하고, 서선지구 철도 및 공장의 철도수송용 석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국장, 서선석탄관리국장, 사동연탄공장장, 교통국장, 평양시내 대동태평양조공장 책임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양정부장 · 총무부장 등에게 관련업무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결정의 사실상황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법령들을 통하여 북한은 정권수립기에 있어서 그 당시의 초보적인 사회주의경제정책의 수행과 더불어 지하자원의 국유화 및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관할하에 지하자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공업발전의 연료 및 철도운송용 연료의 확보를 위한 석탄개발에 치중하는 지하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쟁복구기

북한은 3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을 전쟁전의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전후복구3개년계획기(1954~1956)'를 제시하면서 중공업우선과 경공업병진발전노선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경제관리방식에 있어서도 천리마운동 · 청산리방법을 도입하여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전후복구자금의 주요공급원으로서 수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또한 국내공업발전을 위한 소재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업을 공업의 첫 공정'으로 규정하면서 「광업발전3대원칙」을 제시하여 지하자원개발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업발전3대원칙」이란 자국내 부존지하자원의 확보, 광산개발의 효율화, 가공시설의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질탐사사업을 세부화하고, 기술혁신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질탐사사업의 세부화'는 기존 탄광 및 광산의 예비매장량확보를 위한 굴진탐사와 정밀탐사의 강화, 신규광산 및 광산후보지의 개발을 위한 기초탐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자원의 매장량확보를 추진함과 아울러 지질탐사요원의 증원, 탐사설비의 현대화 및 활발한 공급, 물리화학탐사의 선진화로 탐사속도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술혁신의 실현'은 채탄작업의 기계화, 착암 · 발파 · 채굴 · 운반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광산보안기술로서의 습식착암방법의 개발, 가스경보기설치 등의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

시설의 완비 등과 같이 광산개발과 관련한 제반기술의 향상을 말하며, '과학연구사업의 실현'은 지질탐사사업의 확대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연구기관의 증설과 연구인력의 증원을 통한 탐사·채탄·채굴방법의 개선, 탐사·채굴설비의 개선, 광물자원의 처리공정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이 당시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비철금속류의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통제하며 그 수집활동을 일층강화할데 관하여(1953.8.4)」, 「흑색금속류의 수집활동을 성공리에 보장할데 대하여(1953.10.7)」, 「지질탐사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1957.1.4)」, 「주민수입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한 개인들에게 사금채굴을 허가할데 대하여(1959.10.10)」 등의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지하자원개발사업에 모든 국가기관, 단체, 인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질탐사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명령은 ①해당 성 및 각 도(평양시·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각급학교와 각 도의 공업 및 농업전량관에 광물자원실(해당 지역의 각급교원들이 실장을 겸임)을 설치하고, 농업협동조합원·산림보호원·학생들을 지질탐사사업에 망라하여 지방에 분포된 광물자원을 광물자원실에 조사·등록하도록 하며, ②각지 농업협동조합에 지질탐사작업반을 조직하여 농한기에 각종 유동광물에 대한 탐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③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광물자원탐사에 유의하도록 하며, ④농업협동조합의 지질탐사사업에 대하여 금속공업성 산하 지질탐사와 조사반들은 기술적으로 방조하고, 각급 학교교원들에게 지질탐사에 대한 강습을 하여 그들이 농업협동조합을 방조하도록 하며, ⑤대학 및 전문학교의 지질과 학생들을 매년 2개월이상 지질조사 및 측량사업에 참가시키고, 해당 교육에 이에 대한 계획과제를 부과하도록 하며, ⑥교육문화성은 민청중앙위원회와 연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각급학교에 지질탐사〈크루스크〉를 조직하여 청년들을 광물조사사업에 적극 인입하도록 하고, ⑦금속공업성은 현 지질탐사단을 1959년내에 각도 단위로 조직을 개편하며, 동시에 20~25명으로 구성되는 행정구역별 조사반을 120개이상 조직하고, 해당 지방의 광물자원실에 정상적인 기술적 방조를 주며,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탐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⑧광물의 산출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집한 광물표본의 분석·처리능력을 확대하여 군중들에 의하여 탐사된 광물자원의 분석사업을 제 때에 보장하도록 하며, ⑨농업성은 토양지

질조사사업으로 수집된 토양자료와 조사자료를 금속공업성에 1959년 상반기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⑩과학원과 교육문화성은 과학연구 일군과 대학교원들을 동원하여 탐사된 광물자원들의 실험연구사업과 분석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희유원소분석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⑪금속공업성은 광산편람 및 소책자를 발간·배포하여 군중들에게 광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출판총국은 1959년부터 출판계획에 각종 지질도와 지질탐사부문 서적들을 출판하도록 하고, ⑫금속공업성은 1959년 2월부터 1개월간에 지질탐사일군 8,700명을 양성하며, 각 도(평양시·개성시)인민위원회는 지질탐사일군 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사·합숙·식당들을 보장하여 주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중공업육성기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서 농촌에서의 '청산리방식'과 공업에서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경제계획을 실시하면서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군비확장에 치중하는 공업화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1960년대 공업화정책은 기계시설의 노후와 생산성의 부진, 중소의 경제원조감축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1970년대에 새로이 '3대기술혁명노선'을 채택함과 아울러 종래의 공업화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군사비를 축소하였고, 사회주의국가간의 원조와 차관중심의 국제경제협력관계를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1970년대 공업화정책은 외국자본을 방만하게 도입한 결과로 외채의 누적을 야기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로는 외채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종래의 '자력갱생의 원칙'[16]을 다시 강조

---

16)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은 1930년대 스탈린이 표방한 자립갱생노선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것으로 모든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자급자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고숭효'는 자력경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경제구축을 "원료채취부터 완성품의 생산에 이르는 생산순환을 자기완결적으로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료와 동력자원을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국내자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김원, "북한의 공업화정책의 분석평가", 북한의 산업정책의 현황과 변화전망,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1994.11.23), 33~34면).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공업생산률은 계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경제목표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을 제시하면서 공업화에 주력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타파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새로이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발전방침'을 채택하여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기술의 도입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때마침 중국이 1979년부터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비롯한 외자도입법령을 제정·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자극을 받아 북한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0호)」을 제정·공포하여 대외개방조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북한은 이 시기에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수요를 위하여, 수송부문의 애로해소와 동력자원의 획득을 위하여, 또한 국내공업발전을 위한 소재원료의 공급을 위하여 석탄 등의 채취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지하자원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에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직접적인 자금과 시설의 투자유치희망분야로서 지하자원개발사업은 그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9.3)」와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에 관한 규정(1973.9.3)」 등과 같이 북한의 국내공업발전을 위한 소재원료의 채취사업에 동원된 개인 및 단체의 격려와 독려를 목적으로 한 법령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시초로 제정된 1984년의 「합영법(1984.9.8)」이 그 대표적이다. 동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 제정된 「합영법시행세칙(1985.3.20)」은 이 조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동 시행세칙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식료가공업, 피복가공업, 일용품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이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합영유치분야로서 희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4) 대외개방추진기

북한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자극을 받아 1984년부터 적극적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시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을 표명한 최초의 문건은 김일성이 1984년 1월 26일에 발표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이다. 이 문건에서 김일성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 (중략) ---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 데 대한 방침에 따라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뿔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적극 발전시켰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의 통상교류도 끊임없이 넓혀왔다. --- (중략) --- 오늘 우리 앞에는 대외경제관계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 (중략) --- 우리는 최근년간 유색금속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철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뭉테기 외화를 벌 수 있는 위력한 수출품생산기지를 마련하여 놓음으로써 우리의 지불능력을 비할 바 없이 높일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여러 분야에서 기술교류와 경제합작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서로 래왕과 접촉을 많이 하여야 한다. --- (중략) ---"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외무역의 강화, 특히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 및 경제합작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 및 경제합자의 주요대상으로서 지하자원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동 문건을 승인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정무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합영법을 비롯한 외국인투자법제를 제정 · 공

포하였는데, 이들 법령에 의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하자원개발분야는 각광받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7년도에 수립한 제3차 7개년경제계획(1987~1993)에서 부문별목표의 하나로서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연료 매장지와 철광석, 비철광석을 비롯한 새로운 광물을 채굴하고, 동·서해에서 원유자원을 탐사한다"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기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법령으로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이외에도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1.7.5)」, 「지질탐사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지질탐사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1991.8.6)」, 「국가지하자원보호관리규정(1991.8.20)」 등이 있다. 그후, 북한은 1993년 4월 8일에 기존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지하자원법」을 제정·공포하고,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정무원에 위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등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 아직 입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Ⅳ. 北韓의 地下資源法의 分析

1.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구성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가 1993년 4월 8일에 채택한 지하자원법은 북한지역 부존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총 5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제1조~제8조)」에서 지하자원법의 목적과 지하자원개발방향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지하자원의 개발순서에 따라 제2장 「지하자원탐사(제9조~제18조)」, 제3장 「지하자원개발(제19조~제33조)」, 제4장 「지하자원이용(제34조~제42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에 대한 지도통제(제43조~제51조)」에서는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와 지하자원법규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우리나라 지하자원법제의 기본법인 「광업법」과 비교하여 지하자원의 대상, 광업권의 인정여부, 개발절차, 지하자원개발의 감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입법배경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북한의 자력갱생원칙과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의 운영으로 인하여 종래에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였고,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로 추진중인 서구 자본주의의 자본과 기술의 직접투자대상으로서 지하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불법적인 개발과 유출을 방지함에 그 실제적인 제정목적이 있었다.[17] 이것은 중국의 1986년 광산자원법[18]

---

17)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1993.4), 16면.

18) 중국의 「광산자원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료 광업정보(1992.12)」에 게재된 내용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정과 러시아의 1992년 지하자원법[19] 제정의 입법배경과 동일한 것으로, 북한의 지하자원법 제정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지질광산부장 주훈은 "광산자원의 탐사, 개발사업의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국력을 증강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몇년 동안 한편으로는 광산자원이 충분히 개발, 이용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가 불완전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광산자원의 탐사는 물론 개발과정중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여 왔다. 즉, 자원탐사공작에 있어서 통일된 계획과 관리가 결정되어 각 부처간에 허다한 불필요한 공작이 중복되었으며, 적지않은 공작단위가 종합탐사, 종합채굴, 종합이용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자원개발이용의 채광, 선광, 회수율을 높이지 못하였고, 어떤 지방에서는 소규모광산을 확대시킨 후에 소규모광산의 지도와 관리의 강화에 주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원의 낭비와 파괴를 조장하고, 자원탐사, 개발의 속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의 총임무, 총목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산자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30여년 동안의 광산공작의 경험을 총집결한 입법의 기본지도사상으로 광물 및 광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보장한다는 헌법규정을 제현하고, 국가는 '확대, 활약, 관리'의 총방침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며 향·진 기업에 대하여 '적극 지지, 합리적인 계획, 정확한 인도, 관리의 강화'를 실행하는 방침을 제현하고, 법률의 보장으로 국영, 집단, 개인의 탐사와 자원개발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내고 광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보호함으로써 지질공작을 강화하고 광업을 진흥시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의 광산자원법 초안을 제기한다"고 하여 중국의 광산자원법의 입법배경을 설명한 바[20]가 있는데, 이러한 문헌에 비추어 볼 때에 북한의 지하자원법 제정배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1991년 이후부터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부족, 채굴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21] 지하자원생산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고, 연방해

---

19) 러시아의 「지하자원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러시아지하자원법(1993.10)」에 게재된 내용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20)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료 광업정보(1992.12), 17~18면.

21) 최성기, 러시아연방 광물자원개발 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9면.

체 이후에는 광물자원의 관리체계미흡, 해외불법유출에 대한 통제결여, 생산성 하락으로 광물자원의 국내수요 충당부족, 자원을 소유한 각 지방공화국의 자원주권 주장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시설의 투자유치를 확대함과 아울러 자원의 불법적인 개발과 유출의 방지 및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자원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중국·러시아의 지하자원법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대하여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하자원의 대상에 있어서 북한은 육지의 지하자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는 해양자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자원의 개발주체에 있어서도 북한은 기관·기업소·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개인에게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탐사에 대한 통일된 등기제도와 러시아의 자원권 획득에 대한 공개입찰제도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 제정의 또 하나의 입법배경으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환경보호정책과 자원개발정책의 통일화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로 자연보호에 관심을 갖고 자연보호규정을 자신의 헌법에 반영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왔다. 북한도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환경정책에 동참하여 1986년 4월 9일에 자연환경보호의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고,[22] 그후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를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헌법적으로 흡수하여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자연보호입법의 주요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23] 북한도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환경정책방향에 입각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

22) 북한의 환경보호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북한법제분석 95-2), 1995」를 참조.

23) 稻子恒夫, "社會主義諸國における自然保護法",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社會主義國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法律文化社, 1975, 6면.

대한 기본법으로서 「지하자원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정책을 반영하여 지하자원법 제31조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환경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지하자원개발정책의 통일화는 러시아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러시아(구소련)는 1950년대 중반이후 연방구성 각 공화국의 자연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하자원 등의 이용과 보호를 규정한 법으로서 지하자원에 관한 기본법인 지하자원법을 1992년 5월 5일에 제정하고, 동년 7월 15일에 개정 지하자원법의 제정을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낙후된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업화우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업화정책의 기초로 되는 광산자원법을 1986년 3월 19일에 제정·시행하고, 그후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1989년 12월 26일에 환경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3.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제정의의와 평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적용되어온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또한 법령으로서의 체계와 내용상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하자원의 효과적인 탐사·개발·이용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민족자원의 보존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지하자원개발과정에서의 환경파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동법 제31조)을 두고 있는 것과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로 개별법에 구체화된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규정(동법 제8조)을 두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의 환경정책을 반영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대상으로서의 지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그들이 제정한 지하자원법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자원법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제정의의와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제안취지를 보고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겸 정무원 부총

리 홍성남은 "지하자원법 초안은 지금까지 적용되어오던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분야의 규정들의 주요내용을 현실발전에 맞게 보충하고 종합체계화한 것으로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며, 모든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탐사확정하여 우리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탐사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탄광, 광산들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더 많은 개발후보지를 꾸리는 것을 탐사부문의 기본임무로 규정하여 탄광, 광산물에서 생산을 전망성있게 늘일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하자원개발의 모든 공정에서 제도와 질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며, 개발작업과정에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지 말데 대한 요구와 이 부문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지하자원을 자기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보관, 수송 도중의 손실을 없애고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여 실수률과 유가성분의 거둠률을 높일데 대한 과업과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을 리용하는데서 지켜야할 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 리용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하고 이 부문에 대한 보장사업과 감독통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하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하자원법 초안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관련한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공화국 정부의 제반 시책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지하자원부문의 기본법전이며, 사회주의경제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이며, 지하자원법의 채택은 오늘날 복잡한 국제정치정세와 세계적인 경제파동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고, 각급 인민정권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지하자원법의 내용을 널리 해설침투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며 법집행을 위한 필요한 규정과 세칙들을 새로 만들어 지하자원법의 요구를 실속있게 관철해나가도록 하며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들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법집행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24]라고 하여 지하자원법의 제정의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세영은 "지하자원법은 우리 당의 독

---

24) 민주조선, 1993.4.9., 3면.

창적인 지하자원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 분야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강령적인 법전이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확고히 담보하는 힘있는 법적 무기로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복무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지하자원을 자본의 독점물로 만들고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부르죠아사회의 자원개발법률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지하자원법의 본질적 특징과 우월성이 있고, 또한 지하자원법은 그 포괄범위와 구성체계에 있어서 독창적인 새형의 법전이며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게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보호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 원칙과 과학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한 가장 우월한 지하자원법전입니다"[25]라고 하여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의 유치를 위한 법령으로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하자원법과는 달리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등의 주체가 기관, 기업소,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기업도 그 주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1994.2.21)」 제68조는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광업권제도의 운영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26]

4.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내용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 개발순서에 따른 절차내용,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총 5장 51개조의 규정으로 추상

---

25) 민주조선, 1993.4.9., 6면.

26)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정무원의 집행을 위한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야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법에 대한 정무원의 시행세칙 등의 제정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관한 기본법인 북한의 지하자원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2장 지하자원탐사, 제3장 지하자원개발, 제4장 지하자원이용,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지하자원법의 기본원칙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1장「지하자원법의 기본」에서 지하자원법의 목적, 지하자원의 대상과 소유주체,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탐사 · 개발 · 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 지하자원법의 목적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그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지하자원관리에 대한 종래의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와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법으로서 지하자원법을 제정하여 기관 · 기업소의 지하자원개발 등을 독려하고,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에 동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법 제12조제2항이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지하자원탐사가 종래에는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나) 지하자원의 대상과 소유주체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대상에 대하여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

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지하자원의 소유주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대상으로서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을 규정하여 광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광업법이 광물자원으로서 66개의 법정광물로 제한하는 것과 구별되는데,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에 속하는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은 우리나라의 광업법상 광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개별법인 지하수법 · 온천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중국의 광산자원법은 "지표와 지하의 광산자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하자원법은 "지질학적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접근가능한 땅밑이나 바다밑의 자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소유주체로서 "국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이다.

(다)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탐사 · 개발 · 이용의 기본방향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탐사 · 개발 · 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국가의 역할, 지하자원의 보호의무, 국가의 지도와 통제의 강화, 지하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의 역할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탐사 · 개발 · 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지하자원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하자원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고(제3조),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므로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하여야 하고(제4조),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므로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자원의 보호의무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의 지도와 통제의 강화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제7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④ 지하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제8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2) 지하자원의 탐사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2장 「지하자원탐사」에서 지하자원탐사의 일반원칙, 지하자원탐사의 설계, 지하자원탐사의 방법,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법상의 지하자원탐사절차도와 그 규정내용을 지하자원탐사절차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지하자원탐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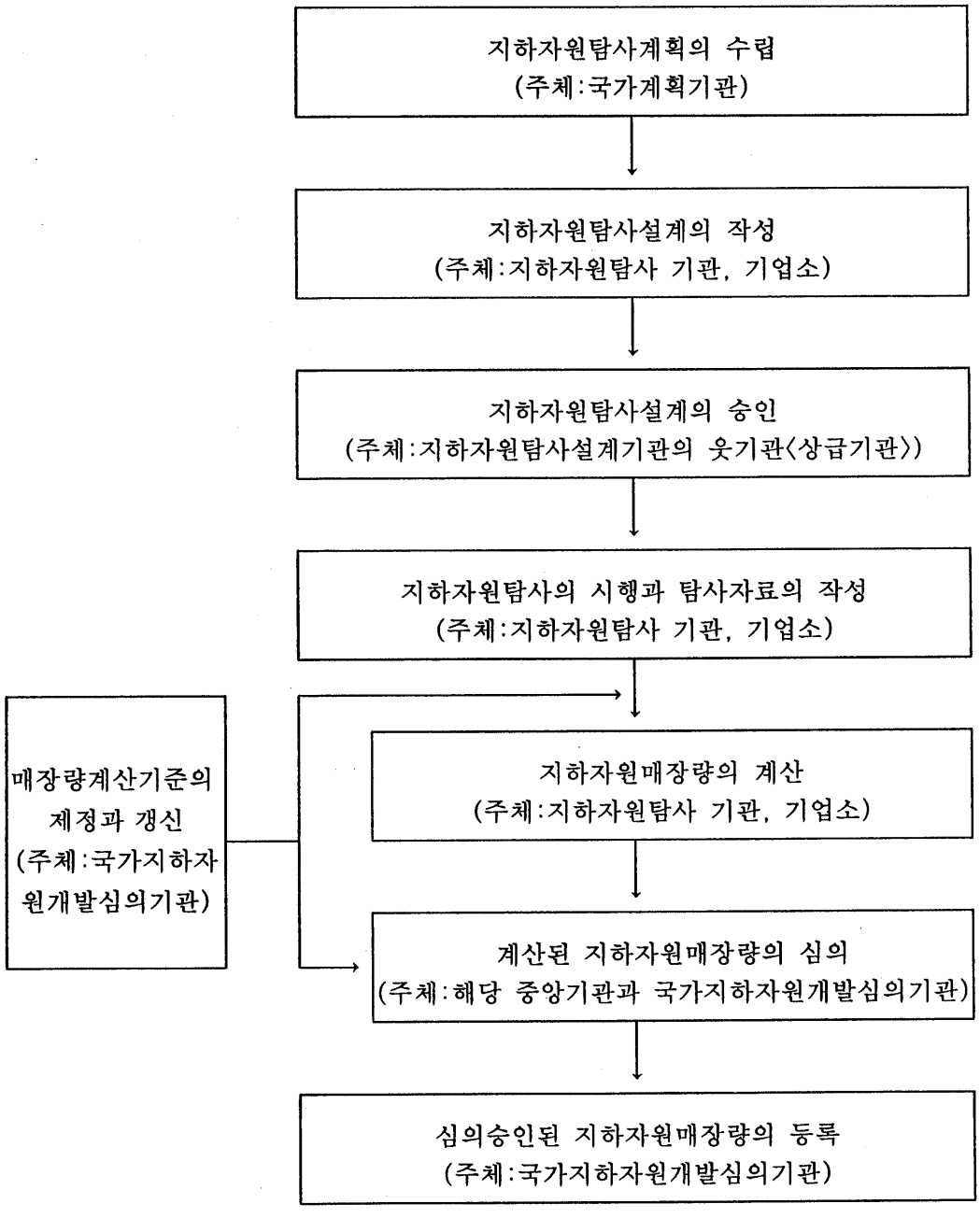

(가) 지하자원탐사의 일반원칙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우는 것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본담보이므로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고(제9조),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하고(제10조), 지하자원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하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를 바로하여 탄광, 광산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개발후보지를 마련하며 탐사지역의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탐사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지하자원탐사의 설계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탐사설계는 해당 웃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고 지하자원탐사설계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지하자원탐사의 방법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의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하고(제13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제14조)"고 지하자원탐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라)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등록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관련하여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정하고,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

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제15조)"고 하여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의 제정과 갱신의 주체를 규정하고,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며,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의 심의는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한다(제16조)"고 하여 지하자원매장량계산의 주체와 심의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심의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등록하고,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으며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제17조),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제18조)"고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지하자원의 개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3장 「지하자원개발」에서 지하자원개발의 일반원칙, 지하자원개발의 신청과 승인,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과 승인, 지하자원개발의 방법,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의 수립, 지하자원의 채굴방법, 지하자원개발상의 지하자원매장량변동의 등록 등의 지하자원개발단계의 개발절차와 기술적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환경파괴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은 주목된다. 북한 지하자원법상의 지하자원개발절차도와 그 규정내용을 지하자원개발절차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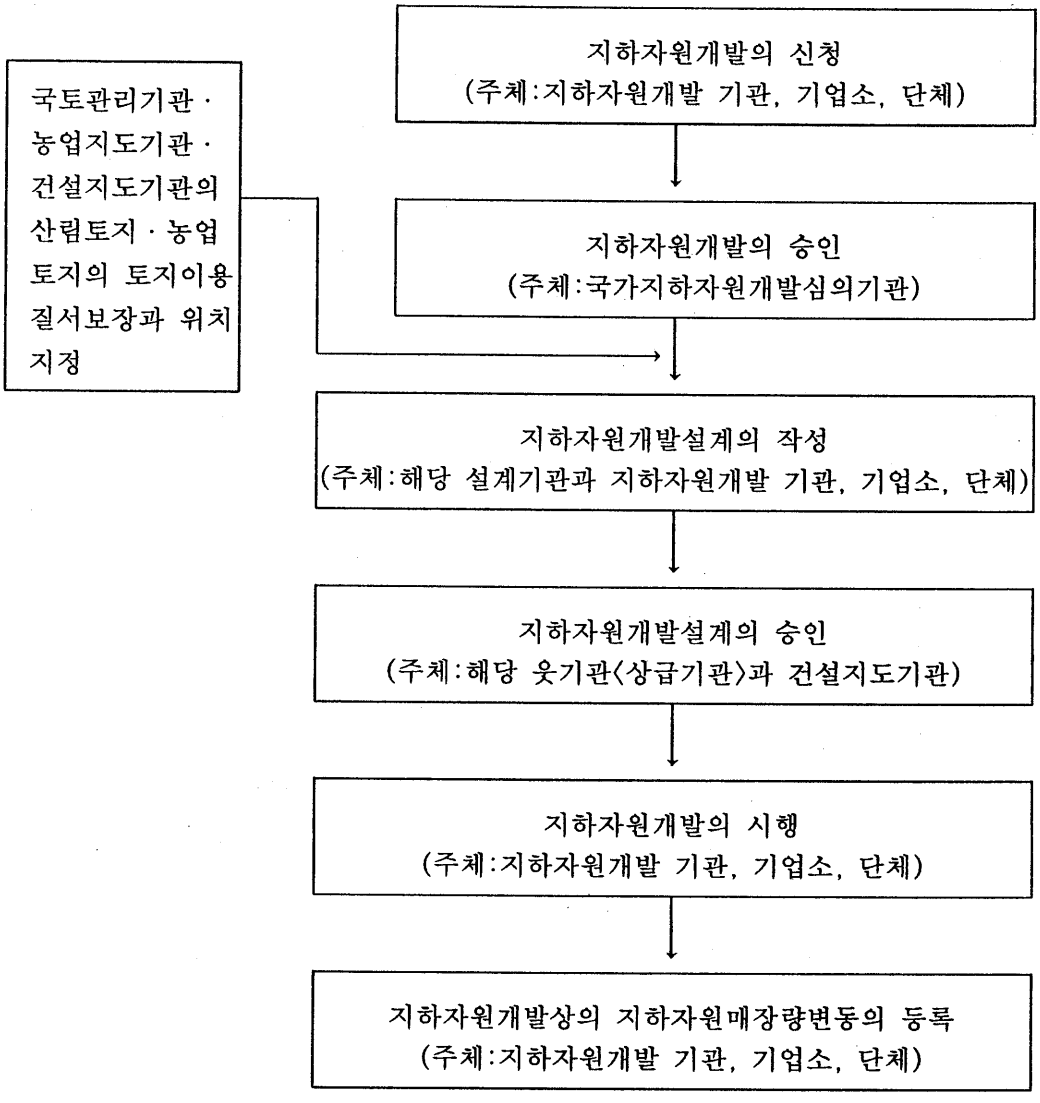

(가) 지하자원개발의 일반원칙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므로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여야 하고(제19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하며(제2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제30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제33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개발단계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지하자원개발의 신청과 승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내야 하며, 지하자원개발승인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하되,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 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을 하여야 하고(제2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건설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하고,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 수 없으며(제21조),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 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32조)"고 하여 지하자원개발의 신청과 승인의 주체와 절차, 관계기관의 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과 승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고,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웃기관과 건설지도기관이 한다(제22조)"고 하여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과 승인의 주체, 지하자원개발설계작성시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지하자원개발의 방법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개발방법과 준수사항을 선언하고 있다.

(마)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의 수립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하고,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 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제24조)"고 하여 지하자원개발지표수립의 주체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바) 지하자원의 채굴방법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하고,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5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 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하고(제26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고 할 경우에는 갱을 리용하여 할 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 수 없다(제27조)"고 하여 지하자원 채굴에 있어서 광체의 전부채굴(선별채굴의 금지), 채굴조건에 따른 순차적 채굴, 폐광 또는 폐갱 이전의 갱과 채굴장의 실태기록, 승인없는 무단폐광 또는 폐갱의 금지 등과 같은 기술적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 지하자원개발상의 지하자원매장량변동의 등록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과정에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는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하고,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 수 없다(제29조)"고 하여 지하자원개발상의 지하자원매장량변동의 등록과 지하자원매장량의 삭감에 대한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4) 지하자원의 이용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4장 「지하자원이용」에서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하자원이용의 일반원칙, 지하자원이용기관 등의 준수사항,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유관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자원의 외국반출에 대한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하자원이용의 일반원칙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므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제34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지하자원이용기관 등의 준수사항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

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싣고 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하고(제35조),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 가공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제37조),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광, 버럭, 미광, 광재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하고(제38조),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 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하며(제39조), 지하자원을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제42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지정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지하자원의 저장 · 가공공정 등의 단계에서 유실 및 허실을 방지하여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유관기관의 준수사항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고, 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건설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없다(제41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수송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운수기관의 수송도중의 광물자원손실 방지의무와 광천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라) 지하자원의 외국반출에 대한 승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금속광석과 그 정광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0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외국반출에 대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제재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제5장「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하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및 감독통제기관,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하자원법규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등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제45조)"고 지하자원 개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사업에 지도기관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아울러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지도기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하고,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정무원 산하 중앙기관으로서 현재 지하자원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석탄생산을 관장하는 석탄공업부, 일반광물자원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개발부와 광업부, 기타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을 담당하는 금속공업부, 국가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원자력총국과 전력공업부 등이 북한내의 에너지와 자원산업에 대한 국가계획과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7]

②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고,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

---

27) 북한의 지하자원 관리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2장을 참조.

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③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통일적으로 하고,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44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사업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유관기관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데 돌려쓸 수 없고(제46조),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제47조)"고 규정하여 지하자원개발사업의 유관기관으로서 특히, 국가계획기관 · 로동행정기관 · 자재공급기관 · 재정은행기관과 과학연구기관 · 교육기관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나) 법규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28]과 행정적 · 형사적 책임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자원개발승인서

---

28) 우리나라의 공법체계는 행정청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그 희생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손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 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아울러 사법체계도 공법상의 손실보상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볼 때에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구별하여 사용되는 법률용어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도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의 법령에 있어서도 보상과 배상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의 요구를 어긴 경우에는 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며 비법적으로 채취한 지하자원을 몰수하고(제49조), 지하자원 탐사와 채굴을 되는대로 하였거나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지하자원매장량장악질서를 어겨 지하자원과 자금을 손실, 랑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제50조), 지하자원법규를 어겨 국가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51조)"고 규정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적 ·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북한의 공개된 형법(1987.2.5)의 주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밀수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동법 제70조)"고 규정하고, 또한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 대로 캐여 국가에 엄중한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동법 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Ⅴ. 南北韓 地下資源法의 比較·分析

1. 우리나라 지하자원법제의 구조와 연혁

지하자원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채굴광물은 국유라는 전제하에 국가가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광업권을 부여할 권능을 가지고, 개인은 국가로 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여 지하자원을 개발·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또한 국민경제상 합리적으로 행해져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행해져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자원, 특히 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광업법을 제정하여 규제하면서도 주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촉진 및 합리화를 위하여 특별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20조)"고 하여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지하자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광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석탄산업법·광산보안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1951년 12월 23일(법률 제234호)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다"는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고, 그후 몇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1981년 1월 29일(법률 제3357호) "광물자원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정광물을 추가하고, 사업착수제도 및 조광권제도를 개선하며, 광업권 및 조광권에 대한 취소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개정되었고, 또한 그후 몇차례의 일부개정을 걸쳐 현행의 광업법(1994.3.24. 법률 제4755호)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행 광업법은 총 11장 117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에서 광업법의 목적, 법정광물 · 광업 · 광업권 · 조광권의 정의, 광업권자의 자격, 광업권자 ·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광업권(제12조~제51조)에서 광업권의 성질 · 처분제한 · 존속기간, 광업권설정의 출원, 광업권의 취소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조광권(제52조~제66조)에서 조광권의 성질 · 처분제한 · 존속기간, 조광권자의 자격, 조광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조광권의 취소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제4장 광구 등의 조정(제67조~제77조) · 제5장 국영광업(제78조~제82조) · 제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제83조~제90조) · 제7장 광해배상(제91조~제98조) · 제8장 감독 및 조성(제99조~제104조) · 제9장 이의신청(제105조~제110조) · 제10장 보칙(제111조~제113조) · 제11장 벌칙(제114조~제1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비교할 때에 북한은 그 적용대상을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으로 규정하여 "지열, 지하수와 광천 자원"에 대하여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하자원법제는 광물자원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66개의 법정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열"에 대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하수와 광천 자원"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서 「지하수법」과 「온천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법(법률 제4599호)」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과 적절한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 10일에 제정 · 시행되고 있으며(총 5장 24개조 부칙으로 구성), 「온천법(법률 제3377호)」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2일에 제정 · 시행되고 있다(총 28개조 부칙으로 구성).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120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성이 강한 지하수와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하자원,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일반법인 우리나라의 광업법과 북한의 지하자원법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우리나라 광업법의 비교 · 분석

남북한의 부존광물자원에 대한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우리나라의 일반법인 광업법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상이점에서 도출된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법과 우리나라 광업법간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광물자원 뿐만 아니라 "지열, 지하수와 광천 자원"을 포함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광물자원으로서 66개의 법정광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 지하자원법상의 "지열"을 규율하는 개별법은 없지만, "지하수와 광천 자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과 「온천법」 등의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2) 광업권의 존재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을 특허받은 개인이 광물자원을 채굴 · 취득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광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미채굴광물은 국유라는 전제하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로 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여 광물자원을 채굴 ·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1994. 2.21)」의 경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68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북한은 외국기업의 지하자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기업에 한하여 광업권제도를 운영할 의도가 있음은 파악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3) 광물자원탐사의 주체와 절차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계획기관이 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가 지하자원탐사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웃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국가를 지하자원의 탐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광업권의 소유자인 광업권자가 탐광에 필요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탐광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탐광실적을 국가로 부터 인정받으면 계속적으로 광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권자를 탐광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

(4) 광물자원매장량의 관리제도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제정하고,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매장량을 계산하여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으며,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심의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이러한 지하자원매장량의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광물자원개발의 주체와 절차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제출하여 개발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건설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이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고 위치지정을 하여 주며, 지하자원개발승인 이후에도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웃기관과 건설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 기

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의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의 수립의무, 광체전부채굴의 의무, 폐광·폐갱의 금지, 지하자원매장량의 삭감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광업권의 소유자인 광업권자가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광계획의 인가만 받으면 광물자원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47조),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개발승인과 동시에 유관기관에 의한 토지 등의 보장과 위치의 지정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업권의 소유자인 광업권자가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광구의 위치를 설정하고, 당해 토지가 임지 및 농지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별도의 전용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의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의 수립의무, 광체전부채굴의 의무, 폐광·폐갱의 금지, 지하자원매장량의 삭감금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광물자원의 이용규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석탄·광석·정광·원유 같은 광물자원의 저탄·저광·수송과정에 있어서의 자원낭비방지, 거둠률기준의 보장, 지하자원의 국가지정용도에의 이용, 비금속과 그 정광의 수출승인의무, 광천자원의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이러한 광물자원의 이용규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물자원의 수출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수출제한승인품목인 때에 한하여 해당 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간접규제하고 있으며, 온천자원에 대하여는 「온천법」에서 온천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개발의 도모를 통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있다.

(7) 광물자원의 보호와 감독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정무원의 지도하에 해당 중앙기관이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지하

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하며,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국가계획기관 · 노동행정기관 · 자재공급기관 · 재정은행기관이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부문에 필요한 노력 · 설비 · 자재 ·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유능한 기술자 · 전문가들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광업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등에 관한 관리업무, 기술지도업무 등을 상공자원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법상의 지도 · 감독과 비교하여 상당히 그 범위와 강도가 약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국가계획기관 · 노동행정기관 · 자재공급기관 · 재정은행기관 등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 부문에 필요한 노력 · 설비 · 자재 ·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광산자원개발과 관련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만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8) 법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을 불법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의 중지 · 개발승인의 취소 · 채취지하자원의 몰수를 행하고, 지하자원의 손실 · 낭비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시키며, 국가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재산권으로서의 광업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통하여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등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광업권의 설정 및 행사과정에서의 법위반자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각각 벌칙규정과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법위반자를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 또는 국토관리질서의 위반자로 간주하여 반국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광업법은 광업권설정과정 및 보고의무의 위반자, 광업권자의 재산권행사과정의 타인의 손해발생자 등에 대하여 벌칙과 광해배상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달을 도모함과 아울러 광업권자의 재산권행사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Ⅵ. 結 論 : 南北韓 地下資源共同開發의 法制的 檢討

북한은 1970년대의 경제적 실패와 대외적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에 의존하던 기존 경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자극을 받아 1984년부터 적극적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시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방화정책추진의 초기에는 그 성과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조총련계 자본의 유치에만 머무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부터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이전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관계법령을 잇따라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외국인투자대상으로서의 지하자원의 중요성과 국내 지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3년 4월 8일에 북한지역 부존지하자원을 규율하던 기존의 제법령을 종합·체계화하여「지하자원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지하자원법 제정은 법령으로서의 체계 및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민족자원인 지하자원의 보호·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돌리고 있는 점과 남북한의 무역구조적 측면에서 북한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에 따른 지하자원개발의 부진과 우리나라의 부존지하자원의 부족에 따른 지하자원의 절대적 해외의존성·남북한의 지하자원부존량의 불균형·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지하자원수송비의 절감효과 등을 고려할 때에 남북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공동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지하자원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로 적극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왔지만, 최근 남북한간의 정치적 갈등과 북한내부의 정치·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남북한관계가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남북관계는 정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조감할 때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인 현재의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민족의 동질성확보를 위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남북공동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높은 지하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교류현황과 남북한공동개발시의 유의할 점을 법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한의 경제교류현황

우리나라는 1988년에 대북경제개방조치를 취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1990년 8월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그 이북지역(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법률 제4239호)」을 제정하여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 체육 · 학술 ·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허용하였다. 이 당시의 지하자원교역량, 즉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부터 1991년 12월말까지의 3년간 남북한지하자원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남북한교역총액은 미달러 2억 4,060만(승인기준)으로 소련 · 중국 · 일본 다음으로 북한의 네번째 교역국에 해당하고, 남북한교역비는 반입이 전체 통관의 95.2%에 해당하며, 반입품목으로는 철강금속(54.8%)과 광산물(14.3%)이 전체의 69.1%에 해당하고, 단일품목으로는 아연괴 · 금괴 · 시멘트 · 빌레트 · 무연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9]

그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한간에는 1991년 12월 13일에 우리측 대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 대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하면서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19. 발효)」가 채택되었다. 특히, 동 합의서의 제3장을 구체화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

---

29) 변정규, 북한의 금속광물자원 현황분석, 한국자원연구소, 1992, 40~41면.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제1장 경제교류·협력의 제1조 (가)호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지하자원개발사업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간의 정치·경제적 갈등과 북한내부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남북한관계가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교류현황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주춤한 상태이다.

2.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문제점과 공동개발의 유의사항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그들이 1984년 이래로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제의 경향과 비교하여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적인 경제폐쇄지향적 경향, 지하자원개발의 경제성과 지하자원이용의 개인영리성을 배제한 철저한 국가통제관리체계의 구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북한법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언성·추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등의 공동개발참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탐사의 경우에 탐사주체로서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기관의 탐사계획에 입각하여 지하자원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하자원의 탐사주체로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탐사주체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지하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의 경우에 지하자원개발주체로서 단순히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하자원의 개발주체로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동법은 광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투자기업의 광업권 인정을 의도하고 있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관련규정(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8조)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 투자기업 등에 대한 광업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세째,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지하자

원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지정용도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의 수출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 등이 영리추구목적으로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독자적인 수출가능성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법의 문제점들은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투자기업 등의 직접투자를 위축하는 요소로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북한의 지하자원법상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개발합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광업권의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고, 광업권을 임대받은 경우일지라도 임대광업권의 매매 · 재임대차 · 상속 · 증여 · 저당 등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지하자원의 탐사 · 개발측면에서도 북한의 국가계획기관에 의한 지하자원탐사계획에 구속되지 않고, 향후 개발기득권을 인정받으며, 지하자원의 개발위치 · 개발설계 · 채광 · 폐광 · 폐갱 등의 사항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세째, 지하자원의 이용면에서 개발된 지하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북한의 필요한 중요자원인 경우에는 북한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자원인 경우에는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도록 개발자원처분의 자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부존지하자원은 향후 통일한국의 자원일 뿐만 아니라 민족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무계획적인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하자원의 개발과 보존, 그리고 환경보호의 조화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附 錄 : 社會主義國家의 地下資源法

○ 북한의 지하자원법 ····· 5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93.4.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1993.4.8)

○ 중국의 지하자원법 ····· 65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6호(1986.3.19)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1986.3.19)

○ 러시아의 지하자원법 ····· 74

- 러시아연방공화국 지하자원법(1992.7.15)
- 러시아연방공화국 지하자원법시행령(1992.2.21)

북한의 지하자원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93.4.8)

지하자원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고 개발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새 조선 건설의 첫 시기부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원료, 연료 기지를 꾸리는 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는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고 개발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지하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며 리용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이 부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을 채택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1993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1993.4.8)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지하자원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8조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지하자원탐사

제9조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우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담보이다.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제11조 지하자원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를 바로하여 탄광, 광산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개발후보지를 마련하며 탐사지역의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탐사설계는 해당 웃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의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4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정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자원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의 심의는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

이 한다.

제17조 심의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등록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으며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8조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제19조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0조 지하자원개발승인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개발 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 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건설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 수 없다.

제22조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웃기관과 건설지도기관이 한다.

제23조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4조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 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제25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 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27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고 할 경우에는 갱을 리용하여 할 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 수 없다.

제28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제29조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과정에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는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 수 없다.

제3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3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 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지하자원리용

제34조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싣고 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가공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분광, 버럭, 미광, 광재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제3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 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금속광석과 그 정광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건설 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4조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 탐사, 개발 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데 돌려쓸 수 없다.

제47조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제48조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자원 탐사, 개발, 리용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요구를 어긴 경우에는 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며 비법적으로 채취한 지하자원을 몰수한다.

제50조 지하자원 탐사와 채굴을 되는대로 하였거나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지하자원매장량장악질서를 어겨 지하자원과 자금을 손실, 랑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지하자원법규를 어겨 국가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중국의 지하자원법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6호(1986.3.19)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1986년 3월 19일에 통과되고, 현재 공포하며,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1986.3.19)

제1장 총 칙

제1조 광업을 발전시키고, 광산자원의 탐사와 개발, 이용 및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본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의 탐사와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광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 지표와 지하의 광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권은 그것이 속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르지 않는다.

국가는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장한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광산자원을 침범·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광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광산자원의 탐사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신청하고, 채광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는 합법적인 탐광권과 채광권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광구와 탐사작업구역의 생산질서 및 작업질서가 영향을 받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채광권은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할 수도 없다.

제4조 국영광산기업은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주체이다. 국가는 국영광산기업의 공고한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향·진(鄕과 鎭은 縣아래의 지방행정단위를 말한다) 단위의 광산기업 발전을 고무하고 지도하며 돕는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의 법에 따른 채광을 지도하고 돕는다.

제5조 국가는 광산자원에 대하여 유상채굴을 실행한다.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국가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자원세와 자원보상비를 납부한다.

제6조 국가는 광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하여 통일된 계획을 실행하고, 합리적으로 지역을 나누며 종합적으로 탐사하여 합리적인 채굴과 종합적인 이용의 방침을 실행한다.

제7조 국가는 광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를 고무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광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수준을 높인다.

제8조 광산자원의 탐사와 개발, 보호 및 과학기술연구의 방면에서 업적이 뛰어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한다.

제9조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처는 전국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굴의 감독과 관리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관계부처는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처의 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굴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협조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지질광산주관부처는 당해 행정구역 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굴의 관리를 주관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유관주관부처는 지질광산주관부처의 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굴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협조한다.

제2장 광산자원탐사의 등기 및 채굴의 심사와 비준

제10조 국가는 광산자원의 탐사에 대하여 통일된 등기제도를 실행한다. 광산자원탐사의 등기는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특정 광산자원탐사의 등기는 국무원에서 위임한 관계주관부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광산자원탐사의 등기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11조 국무원 광산물매장량심사기구 및 성·자치구·직할시의 광산물매장량

심사기구는 광산건설설계에 사용되는 탐사보고를 심사하여 비준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각 단위에 회답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탐사보고는 광산건설설계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

제12조 광산자원의 탐사성과공문자료(探査成果公文資料)와 각종 광산물의 매장량통계자료는 통일된 관리제도로 실행하여야 하고, 국무원이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국영광산기업의 설립은 각각 국무원, 국무원 관계주관부처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

국무원과 국무원 관계주관부처는 국영광산기업의 설립을 비준하고,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처는 비준전에 채굴범위와 종합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심의·사증(查證)하며, 비준후에는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채광허가증을 발급한다. 특정광산물의 채광허가증은 국무원이 위임한 관계주관부처에서 발급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영광산기업의 설립을 비준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주관부처는 비준전에 그 채굴범위와 종합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심리·사증하며, 비준후에는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채광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 향·진 단위의 광산기업의 설립에 대한 심사와 비준, 채광허가증의 발급방법과 개체 채광의 관리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15조 국가는 국가가 계획한 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및 국가가 규정한 보호해야 할 특정 광산물에 대하여 계획적인 채굴을 실행한다. 국무원관계주관부처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채굴할 수 없다.

제16조 국가가 계획한 광구의 범위,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광구의 범위 및 광산기업광구의 범위는 법으로 확정된 후, 확정광구범위의 주관기관이 관계 현 및 인민정부에 통지하여 공고한다.

광산기업이 광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야 하고, 원래의 채광허가증발급기관에 새롭게 채광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이 이미 취득한 채광권의 광산기업광구에 들어가 채광할 수 없다.

제17조 국무원이 위임한 관계주관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할 수 없다.

① 항구, 비행장, 국방시설권 지구이내

② 중요공업지역, 대형수리공정시설, 도시와 읍 행정구역의 일정한 거리이내

③ 철로, 중요도로 양측에서 일정한 거리이내

④ 중요하천, 제방 양측에서 일정한 거리이내

⑤ 국가가 확정한 자연보호구역, 중요풍치지구, 국가가 중점보호하는 역사문물과 명승고적 소재지

⑥ 국가가 규정하는 광산자원을 채굴할 수 없는 기타 지구

제19조 광산자원의 탐사 · 채굴시에 발견되는 중대한 과학적 가치가 있는 보기 드문 지질현상이나 문화고적을 보호하여야 하고, 즉시 관계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광산자원의 탐사

제20조 구역지질조사는 국가의 통일된 규칙에 의하여 진행한다. 구역지질조사 보고서와 도면은 국가규정에 따라 검수하여 관계부처가 사용한다.

제21조 광산자원의 전면조사는 주요 광물의 전면조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작업 반경내의 공생 및 반생 광산의 지질조건과 광상공업설계에 대하여 일차적인 종합평가를 내려야 한다.

제22조 광상탐사는 광구내의 공업가치가 있는 공생 및 수반 광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내려야 하고 아울러 그 매장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탐사보고는 비준할 수 없다. 단, 국무원 계획부처가 따로 규정하는 광산탐사항목은 제외한다.

제23조 전면조사와 탐사로 파손될 수 있는 특정 비금속광산, 유체광산, 타기 쉽고 폭발하기 쉬우며 녹기 쉬운 광산과 방사성원소를 함유한 광산은 반드시 성 단위이상의 인민정부 관계주관부처가 규정하는 탐사방법을 채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기술장비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광산자원탐사의 일차지질자료와 도면, 시추암추, 시료측정과 기타 실물표본자료, 각종 탐사지표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광상탐사보고 및 기타 가치있는 탐사자료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상으로 사용한다.

제4장 광산자원의 채굴

제26조 광산기업의 설립은 심사비준기관이 그 광구범위, 광산설계 또는 채굴방안, 생산기술조건, 안전설비와 환경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법률과 국가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비준한다.

제27조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합리적인 채굴순서와 방법 및 선광기술을 채택하여야 한다. 광산기업의 채굴회수율, 채광광물중의 유용광물함유율과 선광회수율은 설계의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요광산을 채굴함과 동시에 공업가치를 가진 공생 및 수반 광물에 대해서는 일관된 계획으로 종합채굴 · 이용하여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종합채굴할 수 없는 광산 또는 동시에 채굴하여야 하나 종합이용할 수 없는 광산 및 유용성분을 함유한 미광에 대해서는 유효한 보호시설을 사용하여 손실과 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국가노동안전위생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0조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환경보호법 관계법률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사용토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농경지 · 초원 · 임야가 채광에 의하여 파괴되었다면, 광산기업은 토지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개간하고, 초목을 심거나 기타 이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산자원의 채굴이 타인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철로 · 공장 · 댐 · 송유관 · 송전선과 각종 대형건축물을 건설하기 전에 건설단위는 반드시 계획중인 건설공정 소재지구의 광산자원분포와 채굴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처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 중요광산을 훼손할 수 없다.

제32조 국무원이 규정한 지정단위가 통일수매한 광산품은 어떠한 기타 단위나

개인도 수매할 수 없다. 채굴자는 비지정단위에 판매할 수 없다.

제33조 국가가 민족자치구에서 채굴한 광산자원은 마땅히 민족자치구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자치구 경제건설에 유리하게 안배되어야 하고, 해당지역 소수민족의 생산활동과 생활을 배려하여야 한다.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은 법률규정과 국가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개발된 광산자원을 우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채광

제34조 국가는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채광에 대하여 적극지지, 합리적인 계획, 정확한 지도, 관리강화를 실행하며, 향·진 집단광산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을 고무하고, 소소하게 분산된 소규모자원과 보통의 건축재료로 쓰일 수 있는 모래, 돌, 점토 및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소량의 광물을 채굴하는 것을 개인에게 허락한다.

국가는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이 끊임없이 기술수준과 자원이용률 및 경제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지질광산주관부처와 지질공작단위 및 국영광산기업은 적극 지지하여 유상호혜의 원칙에 따라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지질자료와 기술을 제공한다.

제35조 국무원과 국무원 관계주관부처가 성립을 비준한 광산기업의 광구범위내에 원래 있었던 향·진 집단광산기업은 폐업하거나 지정된 기타 지점에서 채굴하여야 한다. 광산건설단위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또한 광산기업의 총괄배치에 따라 연합경영을 실행할 수 있다.

제36조 국영광산기업의 총괄적인 배치하에 국영광산기업 상급주관부처의 비준을 얻은 향·진 집단광산기업은 국영광산기업 광구범위내의 소규모광산을 채굴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채광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은 기술수준과 광산자원의 회수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함부로 채굴하여 광산자원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한다.

향·진 집단광산기업을 갱 상하의 공정을 측량·제도하고, 도면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38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는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이 기술개조·경영관리개선하는 것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안전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채광한 자, 무단으로 국가계획광구에 들어가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및 타인의 광구범위내에서 채광한 자, 독단적으로 국가가 규정한 채굴보호성 특정광산물을 채광한 자에 대해서는 채굴정지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채굴한 광산품과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벌금에 처한다. 채광정지를 거부하고 광산자원을 파괴할 때는 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비준을 얻은 광구범위를 초월하여 채광한 자는 본래의 광구범위내로 돌아가 채광할 것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지우고, 광구범위밖에서 채굴한 광산품과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벌금에 처한다. 본래의 광구범위내에서 채굴할 것을 거부하고 광산자원을 파괴한 자에 대해서는 채광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광산기업과 탐사단위의 광산품 및 기타 재물을 빼앗은 자, 채광·탐사설비를 파괴한 자, 광구와 탐사작업구의 생산질서 및 공작질서를 교란한 자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건의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광산자원을 양도한 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에 처한다.

채광권을 매매·임대하거나 양도한 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에 처하고, 채광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4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일괄수매한 광산품을 수매 또는 판매한 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내용이 무거울 때에는 형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괴적인 채광방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광산자원을 심하게 파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지우고, 벌금에 처한

다. 사건내용이 무거울 때에는 채광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 본 법 제39조 · 제40조 · 제42조 규정의 행정처벌은 시 · 현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43조 규정의 행정처벌은 공 · 상 행정관리부처가 결정한다. 제44조 규정의 행정처벌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질광산주관부처가 결정한다. 국무원과 국무원 관계주관부처가 설립을 비준한 광산기업에 대하여 채광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려면,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벌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만기가 되도록 기소하지 않고, 또한 이행하지도 않을 때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47조 광산기업의 광구범위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광구범위를 법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사이의 광구범위분쟁은 관계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원이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48조 본 법의 시행세칙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49조 본 법은 198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 본 법의 시행이전에 비준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광구범위가 미확정되었거나 채광허가증을 미취득한 채 광산자원을 채굴한 자는 본 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보충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참 조 : 동법의 법률책임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규정

(1) 동법 제39조, 제40조와 관련한 형법규정

- 형법 제156조 : 공사(公私)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고, 그 사건내용이 무거울 때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과 구속 및 벌금형에 처한다.

(2) 동법 제41조와 관련한 형법규정

- 형법 제151조 : 공사의 재물을 절도 · 사취 · 강탈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클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또는 구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 : 공사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고, 그 사건내용이 무거울 때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과 구속 및 벌금형에 처한다.
- 형법 제158조 : 누구든지 어떠한 수단을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작, 생산, 영업과 교수, 과학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하여 국가와 사회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주모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또는 구금에 처하거나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3) 동법 제43조와 관련한 형법규정

- 형법 제117조 : 금융 · 외화 · 금은 · 공상관리법규를 위반하고, 투기매매한 때에는 사건내용이 무거운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속에 처하며, 아울러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 형법 제118조 : 밀수 · 투기매매 상습범과 밀수 · 투기매매의 액수가 큰 경우 또는 밀수 · 투기매매집단의 조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울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지하자원법

○ 러시아연방공화국 지하자원법(1992.7.15)

〈〈개정근거〉〉

1. "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수정과 첨가조항은 1992년 6월 26일의 러시아연방법 NO.3134-1의 의하여 개정되었음.
2. 러시아조세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지하자원법과 특별소비세부과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수정과 첨가조항은 1992년 12월 25일의 러시아연방법 NO.4229-1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음.

지하란 지질학적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접근가능한 땅밑이나 바다밑 깊이까지의 지표면을 일컫는다.

본 법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러시아연방 영토내의 지하자원 보호와 이용, 대륙붕과 해상의 독점적인 경제지역, 채광작업시 발생하는 쓸모없는 생산물 그리고 다른 특별한 지하자원의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본 법은 전체 지하자원의 합리적 보호와 이용을 위한 경제적 원칙, 기본적 원칙을 포함하여 국가 및 러시아연방 국민의 이익, 지하자원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장 일반규칙

제1조(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입법) 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법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여 본 법을 규정하며,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지하자원에 관한 입법적 조항들도 본 법에 따라 적용된다.

중앙정부, 주정부, 자치구 및 각 지방에서는 본 법에 의하여 상세히 밝혀진 대로 통치권내에서 지하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본 법은 러시아연방 전지역에서 유효하며,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정규조항과 법령은 본 법에 준한다.

지하자원의 개발시 발생하는 환경보호문제와 토지 · 용수 · 식물 · 동물 및 설비의 사용과 관계된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과 러시아연방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2조(지하자원관련 국가기금)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기금은 러시아연방의 공화국 국경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자원기금과 사용할 수 없는 지하자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자원 국가기금의 조정은 러시아연방의 중앙정부, 주정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및 자치구간의 상호 결정에 따라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제3조(지하자원사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의 권위) 다음의 사항은 지하자원사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 규정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연방 사법권의 관할아래에 있다.

① 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법령의 개선 및 발전

② 연방계획의 실행과 개발에 있어서 천연광물자원의 개발 · 확장, 대체 및 사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서술

③ 지하자원의 사용과 보호 및 개발과 관련된 기준(규범, 규정)에 대한 절차수립

④ 러시아연방공화국과 자치구, 주, 지역의 영해내의 지하자원을 포함하여 지하자원 국가자금을 공동관리

⑤ 영해밖에 위치한 대륙붕과 해상독점경제지역의 지하자원에 대한 관리

⑥ 러시아연방공화국과 지치구, 주, 지역이 공동으로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유용광물의 목록작성

⑦ 러시아연방공화국과 자치구, 주, 지역이 공동으로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에 따른 조치와 조건을 결정

⑧ 연방의 비용으로 획득한 정보관리 및 지질학적 정보에 대한 연방과 지역의 기금운용을 위한 통일된 체계수립

⑨ 지하자원의 합리적 보호와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감독실행에 따른 절차확립

⑩ 유용광물에 대한 매장량파악, 유용광물의 채굴에 쓰이는 지하자원부존지역 및 채굴과 관련없이 설치된 지하설비가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

하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를 포함한 활동사항의 기재

⑪ 조사된 유용광물의 매장량 및 다른 자산의 보유량에 대한 정보조사

⑫ 국가의 환경보호 및 안보에 대한 이유로 특정지역에서의 지하자원 사용을 제한

⑬ 지하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조약의 결정

⑭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계된 실험연구와 과학적 조사를 조정

⑮ 러시아연방 국민의 이익과 지하자원이용자의 권리보호

⑯ 러시아 연방, 자치구, 주, 지역간의 지하자원 이용에 관계된 논쟁해결

러시아 연방, 자치구, 주, 지역과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지하자원이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 규정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4조(지하자원이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 규정에 대한 자치구, 주, 지역 및 러시아연방공화국의 권위) 다음의 사항은 지하자원이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 규정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연방공화국과 자치구, 주, 지역의 사법권 관할하에 있다.

① 본 법에 의하여 확립된 바에 따라 지하자원개발지역내에서 지하자원 보호 및 이용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 규정

② 모든 연방이 국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자원에 대한 일관성있는 국가기금의 조절 및 지하자원 사용권리에 대한 지불형태와 채굴된 광물의 공유권 등을 명시하며,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동의함에 있어서는 러시아연방과 공유하는 공동권의 범위내에서 그들의 권리를 사용

③ 러시아연방내에서 천연광물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에 대한 국가계획의 실행 및 발전에 참여

④ 천연광물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의 실행 및 발전

⑤ 지하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보호에 대한 감독

⑥ 예산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진 정보의 관리 및 유지와 지질학적 정보에 대한 지역기금 설정

⑦ 유용광물 부존지역에 대한 지역별 매장량 표작성 및 유용광물의 채굴과는 관계없이 지하시설의 건설에 쓰이는 지하자원 현장에 대한 설명

⑧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지불비율과 형식의 결정

⑨ 지역적인 필요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건설 및 모든 유용광물의 개발을 위하

여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절차의 확립

⑩ 국민의 이익 및 지하자원사용자의 권리와 소수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하자원사용에 관계된 논쟁해결

⑪ 유용광물광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 및 조건결정

⑫ 러시아연방에 권위가 부여된 문제들은 제외하고, 지하자원 사용과 보호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규제

제5조(지하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책임 및 권리의 규제에 관한 지역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자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책임 및 권리의 규제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사법권 관할아래에 있다.

① 부지의 할당과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학적 및 생태학적인 이익과 관련된 지하자원사용허가에 관한 문제해결에 관여

② 지방산업을 위한 천연광물자원의 개발

③ 기존에 확립된 절차에 따라 지방에서 필요한 지하시설물의 건설과 매장된 일반유용광물의 개발에 대한 허가문제

④ 본 법 제18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활동중단

⑤ 일반유용광물이 채굴되는 지역에서 지하자원의 사용과 보호, 또는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없는 지하시설물의 건설과 관련된 지하자원의 사용과 보호에 대한 감독

⑥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손상을 주거나 경제적 자산과 자연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지하자원 부존지역 및 인구밀집지역과 교외지역, 산업·수송·통신시설지역에서의 사용에 관한 규제의 채택

제2장 지하자원의 사용

제6조(지하자원 사용형태) 다음과 같은 경우, 지하자원사용이 허용된다.

① 지질학적 연구

② 채광작업 및 채광과 관련된 처리작업중의 폐기물사용을 포함한 유용광물의 채굴

③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없는 지하시설물의 건설과 사용

④ 과학,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되거나 다른 중요한 지역(실험지역, 훈련지역, 지질학적 보전지역, 신전보호지역, 자연기념비, 동굴, 그리고 다른 지하함몰지)으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지질학적 현장설정

⑤ 광물학적, 고생물학적 및 다른 지질학적 자료의 수집

지하자원의 사용은 지질학적 연구(탐사, 탐광)와 유용광물의 채굴이 동시에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굴은 지질학적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연구과정이 끝난 직후에 가능하다.

제7조(사용이 허가된 지하자원의 부지) 지하자원의 부지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현장설정 및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없는 지하시설의 건설과 사용, 유용광물의 채굴을 위한 허가에 따라 채굴할당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허가된다. 그러한 할당은 또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에 대한 수행목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연구에 의한 유용광물의 채굴은 그러한 연구와 동시에 또는 연구종결후에 즉시 수행된다.

채굴할당의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용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지하자원의 현장규모와 천연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채광작업시작 또는 작업진행, 갱도 등)에 영향받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굴할당을 부여받은 지하자원의 어떤 사용자도 사용자에게 허락된 허가증에 따라 그 할당구역내에서 지하자원의 사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채굴할당지역내의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채굴할당권리를 부여받은 지하자원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채굴할당의 권한은 지질학적 연구를 위한 허가증에 따라 부여된 지하자원 현장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작업은 지질학적 연구를 위하여 허가된 지하자원의 부지경계내에서 지하자원의 여러 사용자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용자의 상호권리와 책임은 지하자원사용허가시에 결정된다.

제8조(지하자원사용의 제한) 특정한 지하자원 부존지역의 사용은 자연환경과 국가안전을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다.

인구밀집지역, 교외지역, 산업 · 수송 · 통신센터 구역내에서의 지하자원사용은 그러한 사용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경제적 자산 · 자연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된다.

특별히 보호된 지역에서의 지하자원사용은 그 지역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9조(지하자원의 사용자) 다른 주의 법인 및 시민을 포함하여 소유형태와 관련

없이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만약 러시아연방의 사법권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외에는 지하자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방사능 천연광물추출에 대한 사용자는 국영기업만이 될 수 있다.

제10조(지하자원의 사용기간) 지하자원의 사용은 일정기간 또는 기간제한없이 허용된다.

지하자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정된 기간으로 사용이 허가된다.

- 지질학적 연구 : 5년
- 유용광물추출 및 추출과 관련 있는 목적 : 20년까지
- 위와 같은 유형이 결합된 경우 : 25년까지

지하자원의 부지는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이 없는 지하시설의 사용과 건축 또는 특별히 보호되는 부지의 설정 및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시간제한없이 허용된다.

지하자원사용기간은 사용자의 발의권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권리가 허락된 날로 부터 계산된다.

제11조(지하자원사용허가를 위한 원칙) 지하자원사용은 허가증형태로 특별한 권위에 의하여 허가된다.

허가증은 소유자가 사전에 규정한 조건에 응한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지정된 목적에 따라 특별한 구역내에서 지하자원의 부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인증하는 서류이다.

허가증은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와 매장된 유용광물의 개발을 포함하는 작업수행 및 채굴작업과 관련된 폐기물사용, 유용광물의 추출과 관계없는 목적을 위한 지하자원사용, 특별히 보호되는 지질학적 부지형성, 광물학적 · 고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자료수집을 위한 권리를 인증한다.

허가증은 지하자원사용의 여러 형태를 위하여 발행된다.

지하자원사용을 위한 허가증은 부지의 허가와 동시에 허락되며, 부지는 RSFSR의 자원규약에 따라 허가된다. 지하자원사용허가증은 본 법에 따라 부지의 현장소유자에게 발행된다.

제12조(허가증의 내용) 허가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허가증을 획득한 지하자원사용자에 관한 정보

②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의 특별한 성질에 관한 정보

③ 사용이 허가된 지하자원부지의 공간적 경계의 구체화

④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을 위한 채굴할당경계의 구체화
⑤ 면허유효기간 및 작업개시일
⑥ 지하자원부지 및 급수지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비용에 관한 조건
⑦ 천연자원채굴의 협정수준 및 비율분배에 관한 협정
⑧ 지하자원사용과정에서 획득되는 지질학적 정보에 관한 권리의 협정
⑨ 법률과 기준(규범, 규칙)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듯이 지하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호와 안전수칙에 따른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건

지하자원사용허가증은 동의된 협정에 기초하여 생산분배협정의 계약을 포함하는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계약 · 권리 · 의무, 그리고 열거된 조건을 굳건히 한다.

제13조(허가증의 부여절차) 지하자원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허가는 "경쟁"이나 "경매"를 통하여 부여된다. "경쟁"이나 "경매"를 통한 절차나 허가를 얻기 위한 각각의 자산이나 일련의 자산들에 대한 관련 조건들은 허가를 발행하는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으로 있을 "경쟁"이나 "경매"들에 관한 정보나 그 결과는 대중통신수단을 통하여 발표되어져야 한다.

제14조(허가증발급의 거절사유) 다음의 사항들이 발생할 시에 허가증발급이 거절된다.

① 허가출원서가 확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허가출원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거짓인 경우
③ 출원인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 기술적 자원을 소유 또는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주정부의 허가증수여방식) 주정부의 허가증수여방식은 허가증수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자료들을 보다 정기적 · 과학적 · 분석적 · 경제적 · 합리적으로 만든다.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공시되게 하는 일종의 정형화된 절차인 것이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이 조항은 유효하다.

- 광업 및 천연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주정부계획의 실질적인 이행
- 지정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러시아정부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 경제적 · 생태학적, 그리고 그 밖의 이권들
- 허가증획득에 관한 모든 법적 주체와 시민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부여

- 관련 시장의 개발과 지하자원의 사용에 대한 반독점정책의 준수
- 허가증보유자들에 대한 보증(외국인허가증보유자 포함) 및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권리의 보호

제16조(주정부허가체제에 대한 조직조항) 허가체제를 조직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관청은 지하자원재정관리국과 그 지부로 한다. 지하자원재정관리국과 그 지부는 경쟁을 주도하고, 허가증의 발행에 관한 예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자원관리국, 토지와 수자원 및 산림자원관리국과 함께 허가증에 관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광산감찰국과 함께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비용에 관해서는 경제관리국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허가증은 러시아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자치지역의 대표행정부와 재정관리국, 또는 그 지부들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되어진다. 지하자원사용에 관한 허가증을 발행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확정한다.

제17조(반독점에 관한 요구사항) 정부나 행정부, 그리고 경제부의 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금지되거나 이미 확정된 절차일지라도 무효화된다.

- 이 법률에 의거하여 지하자원사용권의 획득을 원하는 시민들이나 법주체들이 경쟁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그 "경쟁"이나 "경매"의 근본취지에 위반한 경우
- 경쟁이나 경매의 "승리자"에게 허가증발행을 거절한 경우
- 지하자원의 경쟁제도를 무시하고, "직접협상"으로 대신한 경우
- 지하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 경제주체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기업을 차별한 경우
- "수송"이나 그 밖의 간접시설물의 응찰을 허가함에 있어서 지하자원사용권자들을 차별한 경우

지하자원재정관리국은 부여된 사용권의 범위내에서 광산할당지역의 크기를 최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8조(매장된 유용광물의 개발에 대한 지하자원 부여) 일반유용광물광상의 개발을 위하여 지하자원을 보조로 부여하는 절차와 법주체와 일반유용광물을 발굴하려는 목적, 그리고 유용광물의 발굴과 관계가 없는 목적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제한된 지역내에서의 지하자원사용에 관한 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헌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영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지역들 및 주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제정된다.

광산작업의 부산물인 폐석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자재용을 생산할 목적으로 유용광물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9조(토지의 소유자나 지주들에 의한 일반유용광물의 발굴) 토지의 소유자들이나 지주들은 그들 영역의 경계선내에서 그들 자신이 직접 일반유용광물의 발굴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발파를 하지 않고 해당 주정부기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5m깊이까지 지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지하자원사용에 대한 권리소멸의 근거) 지하자원사용권은 다음의 상황에서 소멸된다.

① 유효기간의 만료

② 허가증소유자의 포기

③ 허가증에서 예시된 사정이나 부여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하자원사용권은 허가증을 발급한 지하자원재정관리국, 또는 지부에 의하여 기간보다 일찍 소멸될 수도 늦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해당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재직중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한 경우

② 사용권자가 허가증의 기초적 조건들을 위반한 경우

③ 사용권자가 지하자원의 사용을 위하여 제정된 규범들을 계획적으로 위반한 경우

④ 긴급사태의 발생시(자연재해, 군사적 행동 등)

⑤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⑥ 지하자원사용권이 부여된 기업체나 상업적 주체가 파산된 경우

단, 지하자원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에 대한 소멸, 연장, 또는 제한하는 결정에 불복할 시에 행정소송이나 법적 소송에 의하여 불복을 호소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의 소멸절차) 본 법 제20조의 두번째 부분, ①·④항에 명기되어 있는 상황의 경우에 지하자원사용은 그 사용권제한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채택되었든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결정한 후에 즉시 소멸된다. 본 법 제20조의 두번째 부분중, ②·③·⑤항에 명기된 경우처럼

지하자원사용권소멸에 대한 결정은 사용권자가 행한 위법을 서면으로 명기한 날로 부터 3달이 경과했고, 그러한 위법을 바로잡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때에 결정된다. 지하자원사용권의 조기소멸의 경우중에서 그 기업체의 파산 또는 일시적 파업은 본 법 제26조에 명기되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질 것이다. 기업의 일시적 파업이나 파업을 위한 비용은 지하자원사용권자의 책임이다. 단, 지하자원사용이 이 법 제20조의 두번째부분, ①(그 기업체의 과실인 경우)·②·③항에 명기된 이유들 또는 지하자원사용권자의 발단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한한다. 사용기업체의 일시적 파업이나 파산에 대한 비용은 만일 지하자원사용이 이 법 제20의 두번째 부분중, ①항(그 기업의 과실이 아닌 경우)·④항에서 예시된 이유때문에 소멸된다면 주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하자원사용권의 지연이나 제한의 원인이 된 상황이나 사건들이 해결된 때에 그 권리는 전면적으로 회복된다. 지연된 권리기간은 허가증의 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지하자원사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허가에 지정된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활동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된 지하자원의 부지사용

② 입법적 규범적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에서 그러한 활동유형들을 개별적으로 선택

③ 허가증과 법령에 따라 채취된 원료물질을 포함해서 그들의 활동결과의 이용

④ 허가조항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채광활동과 관계된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사용

⑤ 그들에게 허용된 채광할당장소의 경계내에서 유용광물 부존지역에 건축행위를 규제할 권리

⑥ 허가에 따라 허용된 채광할당장소의 경계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비용으로 다른 권한없이도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

⑦ 허가가 문제되어 근본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양상이 일어난 경우, 허가상태의 재검토를 위하여 허가부처에 호소하는 것

지하자원의 사용자들은 허가증유효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른 요청인들 보다도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하자원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확립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수행시에 기술적 기준(규정, 규범)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준수

② 광산개발을 위한 기술계획 및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에 응할 것

③ 지질학적 조사, 지하조사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수행중에 얻은 자료의 보존

④ 지질학적 정보 또는 지식을 연방정부 및 지역지질기금에 제출

⑤ 탐사된 유용광물의 매장량, 지하자원의 채굴여부, 유용광물의 구성 및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이 없는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정보를 연방 및 지역지질기금, 정부통계기구에 제출

⑥ 지하자원이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보장

⑦ 지하자원이용과 관련된 작업의 유해한 효과로 부터 대기, 산림, 수자원, 기타 환경적 특징 및 건물 · 설비 등을 지하자원보호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규정, 규범)에 따라 보호

⑧ 지하자원의 사용동안에 훼손하게 될 다른 땅의 부지와 자연지형을 차후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모양을 갖출 것

⑨ 확립된 절차에 따라 사용에 적절치 않는 시추공과 채굴활동을 금하고, 상업적 목적 및 광산개발에 사용될 시추공이나 실지채광활동을 유지할 것

⑩ 허가증에 설정된 조건들을 지키고, 지하자원의 사용을 위한 적절하고 정확한 비용지불을 준수할 것

제3장 지하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보호

제23조(지하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보호를 위한 기초요건) 지하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보호를 위한 기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자원사용금지 및 지하자원사용에 대하여 입법으로 확정된 절차준수

② 지질학적 연구가 완전하게 수행되도록 보장 및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전반적인 사용과 보호를 보장

③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그들의 사용이 허용되는 지하자원부지의 자산 및 유용광물 부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는 지하자원

에 대한 고도의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

④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자원의 부지 및 유용광물의 보유지에 대한 국가의 조사와 설명

⑤ 중요 유용광물보유지의 지하자원과 함께 발굴되는 다른 유용광물 및 그에 따르는 부산물의 완전한 채굴의 보장

⑥ 유용광물의 광산을 개발할 때, 아직 지하에 남아있거나 이미 채굴된 중요 유용광물과 다른 유용광물 및 그에 따르는 부산물의 부존지역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

⑦ 유용광물의 질과 광산의 상업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광산의 이용을 복잡하게 하는 자연적 홍수, 범람, 화재, 그리고 다른 요인들로 부터 유용광물의 광산을 보호

⑧ 지하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에 특히 기름 · 가스와 기타 물질, 그리고 지하자원들을 저장할 때 또는 산업쓰레기와 오수같은 유독성물질을 매장할 때에 지하자원의 오염을 예방

⑨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계없는 지하설비 및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된 사업의 일시조업중단 또는 해산에 있어서 절차의 확고한 준수

⑩ 유용광물이 존재하는 어떤 현장에 비승인건물의 설립을 막고, 그 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절차를 준수

⑪ 음료용 및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지하수가 산출되는 지역에 산업 및 가정용 쓰레기의 축적을 방지

이 항목 조항들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입법에 따라 특별히 권한이 부여된 주정부에 의해서 지하자원을 사용할 권리는 제한되거나 지연 · 금지될 수 있다.

제24조(지하자원사용과 관계있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 안전규정) 유용광물의 채굴에 관한 사업과 다양한 목적의 지하설비에 대한 건설과 작업, 그리고 지하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의 수행은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일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일반 시민과 그 작업 고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안전조항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주정부와 행정부 및 지하자원의 사용자들과 국가광업감독부는 그들의 권리내에서 지하자원사용자들과 관계있는 사업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인정되어온 법령과 기준에 대한 안전규정의 실행을 보장할 의무가 주어진다.

사업자들은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안전상태를 보장할 직접적 책

임이 있다. 지하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 작업이 허가증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와의 계약을 토대로 수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게된다.

다음 사항이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규정이다.

①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며, 자질을 가진 사람을 고용

② 채광 및 시추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개인적 및 집단적 보호를 위한 특별복공급과 조치수단의 마련

③ 안전규정과 기준, 건강표준규정에 일치하는 기계장비와 기구의 사용

④ 폭발물과 발파장비의 정확한 사용과 보관, 그리고 그러한 폭발물과 장비에 대한 적절한 설명

⑤ 일관된 기술작업의 순환보장 및 위험상황에 대한 효과적 예방을 확실히 하기에 충분한 모든 지질학적 지하탐사와 조사

⑥ 광산의 공기중에 포함된 폭발성분, 유독개스, 산소농도의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산대기의 체계적인 조절

⑦ 비상사태의 발생경우와 정상적 작업환경하에서 해로운 결과발생시에 일반시민 및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고용자들의 보호를 책임질 조처의 마련 및 실행

지하자원사용자들은 가스와 기름의 폭발예방과 수화를 위한 광산안전장치 및 장비를 마련해야만 하고, 계약상 장치 및 장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고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와 다른 권위있는 관리자들은 즉시 일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주시킬 책임이 있다.

지하자원사용과 관계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에 직업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 관계된 기업의 기업주는 해당 주의 행정기구나 지역 행정기관에 그 위협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의 건물에 대한 조건) 건설을 계획한 현장의 지하에 유용광물이 없음을 확신케 하는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인구과밀지역이나 산업단지 또는 다른 경제적 자산지역을 건설할 계획이나 건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용광물이 저장된 지역에서 건축행위 및 지하시설물설치는 지하자원재정관리국으로 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에 허가되고, 유용광물채굴가능성 및 건

물의 경제적 유용성이 입증되어야 허가된다.

제26조(유용광물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지하시설물 및 유용광물 채굴과 관련된 계획의 취소 및 일시조업중단) 유용광물채굴과 관련된 계획 및 유용광물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지하시설물은 지하자원사용의 조기종료의 경우와 허가중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취소 또는 일시조업중단시켜야만 한다.

취소 및 일시조업중단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하자원사용자는 본 법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전술한 취소 또는 일시조업중단이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업, 지하시설물, 채광작업, 시추공들은 자연환경, 건물, 시설물 및 거주민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시조업중단의 경우에 조업중단의 전기간에 걸쳐 광산 및 채광작업, 시추공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지하시설물 및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된 계획 또는 계획의 일부분에 대한 취소와 일시조업중단의 경우에 지질학적 조사, 지하측량도 및 다른 서류들은 절차에 따라 일의 완료시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유용광물채굴과 관계없는 지하설비 및 유용광물채굴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취소와 일시조업중단은 허가증을 발행한 기구와 광업감독부가 취소와 일시조업중단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한다.

제27조(지하자원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 지질학적 보고서와 지질도에 포함된 정보, 지하자원의 지질구조에 대한 수반자료, 발견된 유용광물, 지하자원의 독특한 종류와 성질, 그리고 개발에 대한 조건 등은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허가증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에 투자한 사용자의 소유물이 된다.

지하자원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 및 기타의 정보들의 소유권은 소유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입법부에서 확립한 절차에 따라 보호된다.

계약에서 약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 작업을 수행한 실체는 과학적 및 교육학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하자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지질학적 또는 어떤 다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맡은 연방 또는 지역기금부에서 확립한

기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전술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절차와 조건은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재정관리국과 그 지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하자원에 관한 지질학 또는 어떤 다른 정보를 획득한 조직체, 기업, 시민은 지질학적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이나 적절한 지역기금부에 정보를 제출 ·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사용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정부관리들은 그 정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 보관 · 수집하는 동안에 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8조(평가 및 등록)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와 관련된 작업 및 유용광물채굴 또는 채굴과 관련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허가된 지하자원 현장은 주정부의 평가와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의 평가와 등록은 지하자원에 대한 재정관리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전체 러시아연방을 위하여 단일화된 제도의 토대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29조(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정부의 심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및 지하자원사용료와 지하자원사용이 인정된 현장의 경계설정 등에 대한 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탐사된 광산에 대한 매장량조사를 실시한다.

유용광물채굴에 대한 지하자원의 사용허가는 정부의 심사가 끝난 후에 부여된다.

정부의 심사에 관한 보고서는 정부회계상의 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기초가 된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질학적 자료가 유용광물의 양과 질, 국가경제상의 중요성, 그들을 채굴하기 위한 채광, 수리지질학, 생태학, 그리고 다른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가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광산의 지질학적 연구에 대한 정부심사는 어떤 단계로 취하여져도 무방하다.

지하자원사용이 유용광물채굴과 동시에 지질학적 연구를 위하여 허용될 경우에 정부심사가 취하여지기 전에 지하자원사용자는 유용광물보유지에 대한 채굴을 시작하여도 좋다. 비용을 포함한 지하자원사용의 세부조건과 더불어 주정부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마감은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허가의 조건속에 약정된다.

건설에 적합한 지하자원 현장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및 유용광물개발과 관계

없는 지하시설물이용에 대한 정보는 정부심사를 받아야한다. 지하자원개발에 필요한 현장사용은 지질학적 정보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지하자원사용이 허가된 부지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 및 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정부심사는 지하자원재정관리국과 그 지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제30조(유용광물 흔적지 및 광산에 대한 정부의 측량조사) 유용광물 흔적지 및 광산에 대한 정부의 측량조사는 국가경제와 관계된 다른 목적들 및 유용광물 보유지의 전면적 사용, 지하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를 위한 연방과 지역프로그램의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유용광물 흔적지 및 광산에 대한 주정부의 측량조사는 유용광물의 각 흔적지에 대한 정보, 유용광물 광산의 지질학적 · 경제적 가치평가, 광산개발을 위한 수리지질학, 채광 및 주요 유용광물과 함께 채굴되는 다른 광물의 양 · 질에 대한 서술 및 각각의 매장량과 관계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정부보고서) 원료광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정부보고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각의 유용광물에 대한 산업관련 중요도, 매장량 및 품위, 연구정도, 부존지의 위치, 개발정도, 채굴관련 정보, 탐사된 유용광물의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유용광물 흔적지 및 광산에 대한 정부의 측량조사 및 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보고서작성) 유용광물 광산 및 흔적지에 대한 정부의 측량조사 및 유용광물매장량에 대한 보고서작성은 본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주의 기금으로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한 회사들이 제출한 지질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전술한 기금으로 유용광물의 채굴 및 탐사를 수행하는 회사들에 의하여 제시된 정부보고서를 근거로 작성 · 보존되어야 한다.

제33조(특별한 과학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하자원지역의 보호) 희귀한 지질학적 노출부, 광물학적 지층, 고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다른 과학적 ·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지역은 기존의 절차에 따라 지질학적 보존지, 자연 또는 문화적 유적지로 공표되어야 하며, 그러한 보존지 및 보호지, 그리고 유적지의 보존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지하자원의 사용동안 휘귀한 지질학적 · 광물학적 지층, 운석, 고생물학적 및 다른 문화적 흥미를 가질만한 특징이 나타날 경우에 관련지역에서 작업을 중

지하고, 허가를 내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유용광물 광산발견에 대한 보상) 유용광물 광산의 흔적과 희귀한 지질학적 노출부, 광물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다른 문화적·과학적 가치를 가진 지층을 발견한 사람은 지하자원재정관리국 또는 그 지부와 함께 그 지하자원 현장에 대하여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

전술한 지하자원매장지의 가치는 지하자원재정관리국 또는 그 지부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등록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지불이 가능하며, 금전적 보상지불을 위한 절차와 금액은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4장 지하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제35조(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부의 규제목적)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요목적은 원료광물의 대체와 합리적 이용, 그리고 지하자원보호를 러시아연방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들에게 이롭게 보장하고자 함이다.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부규제는 행정권, 허가제, 그리고 회계·감독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국가규제조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러시아연방 전체와 각 지역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광물자원의 채굴량을 결정
- 광물자원의 개발 및 유용광물추출과 관련없이 지하시설 설비공사에 쓰여질 지하자원 현장건설을 보장
- 채굴된 원료광물의 공급할당량을 결정
-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 및 특별한 종류의 원료광물에 대한 규정된 가격을 도입
- 지하자원에 관한 지질학적 연구, 이용·보호 및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계된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규제, 규범)을 제정

제36조(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가행정)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가행정은 러시아연방의 대통령, 러시아연

방정부, 러시아 최고위원회, 러시아연방구성공화국 각료회의, 주와 지방, 자치구의 행정부와 행정조직, 그리고 지하자원재정관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지하자원재정관리국은 그 지부를 설립한다.

지하자원재정관리국은 유용광물보유지를 탐사하여 개발시키거나 또는 유용광물채굴과 관련없는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유용화하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7조(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대한 국가통제)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대한 국가통제의 목적은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하자원의 이용에 대한 절차와 법률, 그리고 기존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한 지하자원에 대한 연구와 이용 및 보호에도 적용되며, 국가의 회계와 보고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에도 적용되는 기준(규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통제는 국가의 광업감독조직과 환경보호조직, 그리고 다른 감독기구들과 협동으로 국가지질통제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정부지질통제기구의 권력은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법규에 의하여 정의된다.

제38조(지하자원이용과 관련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조항에 관한 국가의 감독) 지하자원이용과 관련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조항에 관한 국가의 감독목적은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규제, 그 작업이 일반대중과 주위의 자연환경 및 건물 · 시설에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과 지하자원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기준(규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자원이용과 관련한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조항에 대한 국가의 감시는 정부의 광업감시기구들이 책임을 진다. 정부의 광업감시기구는 정부지질통제기구와 환경보호기구, 다른 감시기구들 및 무역협회 기구들의 협조하에서 수행된다.

정부의 광업감시기구의 권의 및 권리와 책임, 그리고 작업절차는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구관련법규에 의하여 명시된다.

제5장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비용

제39조(지하자원이용에 대한 비용체제) 본 법의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러시아연방 영토와 대륙붕, 그리고 해상전권경제수역에서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부터 요금을 징수한다.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비용체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지하자원 이용권리금
- 광물원료지 대체에 대한 공제
- 허가증발행에 대한 과세
- 국내소비세(1992년 9월 18일부터 유효하도록 시행됨)
- 용수부존지역과 해저지역 이용요금

또한 지하자원이용자는 토지와 지질학적 정보에 대한 비용 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세금, 과세, 다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법의 제48조에 따라 지하자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지불이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제40조(지하자원사용에 대한 비용의 면제) 러시아연방의 지하자원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내에서 비용이 면제된다.

① 지정된 절차와 그들 스스로의 필수요건에 따라 그들에게 속하였거나 대여된 땅에서 공공에 유익한 광물을 채취하는 땅의 소유자와 지주

② 광역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기타 지질조사 및 연구,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지하자원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하는 지질학적 연구, 지진예보와 화산활동연구에 관련된 지질학적 작업, 지질공학연구, 고생물학과 지질생태학 연구, 지하수탐사, 지하자원의 보존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며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지하자원사용자

③ 본 법 제6조의 ④항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히 보호될 지하자원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사용자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최고회의와 지역 · 주 · 자치구를 구성하는 정부는 비용에서 부터 유사한 예산에 이르기까지 지하자원사용자들의 면제에 대하여 특별범주의 기준을 수립한다. 특정 지하자원사용자들을 위하여 일방적 특혜를 부여하는 정부의 어떤 규범적 조항과 결정들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법에 근거하

여 위법으로 선포된다.

제41조(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은 탐사와 유용광물 광상에 대한 조사 및 그러한 광물의 채굴과 다른 목적을 위한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하여 지하자원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 비용은 일시불징수의 형태 또는 부여된 권리가 유효한 동안에 정기적으로 지불되도록 한 정기적 지불형태로 부과된다.

탐사와 조사의 권리에 대한 지불율은 경제적 · 지리학적 상태, 지하자원부지의 크기, 유용광물의 종류, 작업의 기간, 관련지역에서 수행되어온 지질학적 연구정도 및 포함된 위험부담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다.

채굴권리에 대한 지불율은 유용광물의 종류, 유용광물의 매장량과 품위, 매장된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자연적인 지리조건, 채광 · 개발을 위한 기술적 · 경제적 조건 및 관련된 위험평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용광물채굴권리에 대한 지불은 초기지불과 채굴개시때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정기지불의 형태로 부과된다. 지불금액은 부존된 유용광물매장량의 고갈을 고려하여 채굴된 광물의 가치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그 광물의 채굴생산비에 포함된다.

유용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광산의 할당구역안에서는 유용광물탐사권에 대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지하설비의 건설 및 이용을 포함하여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을 위한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지불은 일시불 또는 정기적 지불로 부과된다.

그 지불율은 사용이 허가된 지하자원부지의 크기, 지하자원의 유용성 및 그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생태적 위험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비용부과의 절차와 상태 및 비용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은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비용의 최종금액은 지하자원사용권리에 대한 허가증이 발급되었을 때에 정해진다.

제42조(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의 분류)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은 러시아연방공화국 예산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예산, 지하자원이 사용되는 지역 · 주 · 자치구, 지방 소도시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다음의 비용은 지역과 소도시의 예산으로 사용되어진다.

- 탐사권과 그 지방의 유용광물 광산의 조사에 대한 모든 비용

- 유용광물의 채굴권에 대한 모든 비용
-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
- 일반유용광물외의 다른 유용광물채굴권에 대한 비용의 일부

비용이 지역과 소도시의 예산으로 독점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용광물채굴권에 대한 비용의 일부분은 러시아연방공화국과 지역 · 주 · 자치구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탄화수소함유 광산의 채굴권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지역과 소도시 예산 30%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 지방 · 주 · 자치구 예산 30%
- 러시아연방공화국 예산 40%

그외 다른 모든 광물의 채굴권에 대한 지불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지방(소도시) 예산 50%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 지역 · 주 · 자치구 예산 25%
- 러시아연방공화국 예산 25%

단일광산 및 광산군(群)으로 부터의 유용광물채굴에 대한 비용의 분배비율은 서로 다른 수준의 예산분배에 따라 정해진다. 그 비율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영해 범주안에 있는 대륙붕의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및 지역 · 주 · 자치구 예산 60%
- 러시아연방공화국 예산 40%

해양독점경제지역안에서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지불은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지역과 주를 구성하는 자치지역내의 유용광물채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나 주의 예산이 러시아연방공화국 예산으로 소속된 비용의 1/2을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으로 받게 된다.

지하자원이 소수민족이나 민족군(群)들의 거주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및 지역 · 주 · 자치구의 예산으로 정해진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의 일부가 그 민족이나 민족군(群)의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제43조(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기탁의 형태)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은 다음의 형태로 부과된다.

- 금융지불
- 사용자에 의하여 채굴된 원료광물 또는 다른 생산물의 일부
- 서비스수행이나 작업수행
- 예산지불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정된 광산기업의 허가자금으로 러시아연방이나 러시아연방공화국, 지역, 주 자치구, 소도시의 지불몫으로서 미래 지불의 계산량

지불형태는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허가증에 규정된다.

방사능물질, 귀금속, 다이아몬드 등과 같이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연방의 입법에 따라 독점적 권리를 갖는 물건이나 다른 광물들, 군사적 및 자연적 특혜, 국가비밀을 이루는 정보에 상응하는 것들은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으로 요구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으로서 그 사용자의 사업적 비밀을 이루는 지질학적 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포기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44조(광물원료지의 대체에 대한 공제) 원료광물지의 대체에 대한 공제는 모든 형태의 유용광물채굴을 수행하는 지하자원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공제는 광물원료지의 대체에 대한 공제를 위하여 국가의 비예산자금에 들어간다. 이 자금은 지역의 지질학적 탐사를 지원하고 과학적인 연구작업,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나 유용광물 광상탐사, 본 법의 시행전에 승인된 계획에 의한 유용광물 광상탐사의 완성 등과 관련된 일에 쓰인다. 모든 다른 광상탐사는 그 광물의 사용권에 대한 허가증을 지닌 기업의 자본을 비용으로 하여서 지급된다.

본 법의 시행전에 허가된 지질탐사를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회사에 의하여 지불이 가능한 광물원료지의 대체를 위한 비예산의 공제금은 실질금융량에 의하여 공제된다.

광물원료지의 대체를 위한 공제의 0.5~1.5%는 유용광물의 탐사 및 매장량조사를 위한 보상에 쓰인다.

광물원료지의 대체를 위한 공제비율, 부과절차, 분배, 공제금의 사용 등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5조(면허증발급에 대한 부과)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허가증을 발행하는 정

부는 허가증발행에 대한 부과금을 받는다. 부과금의 크기는 지하자원사용에 대한 심사비용, 조직비용 및 허가증출허와 관련된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제46조(소비세의 부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리적 · 경제적 · 지질학적 특성들을 지닌 곳으로 부터 채굴된 지하광물의 특별한 유형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소비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47조(해저지역과 해양지역의 사용에 대한 비용) 해저지역과 해양지역의 사용에 대한 비용은 유용광물의 채굴, 탐사, 전망 및 해저경제독점지역이나 대륙붕지역에서 다른 목적을 위한 지하자원과 해저를 개발하는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지불의 크기는 대여된 지역, 형태, 물의 깊이, 지하자원 사용목적 등에 따르며, 과세 지불형태와 절차는 러시아연방법에 의한다.

제48조(지하자원소모에 대한 할인) 지하자원소모에 대한 할인은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비용에 적용되고,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탐사된 매장량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조건위반과 관련되지 않은 객관적 이유로 광상의 경제적 효용이 낮은 곳에서 공급이 부족한 유용광물을 채굴하는 사용자에게
- 매장량의 선택적인 소모로 유용광물의 질이 저하된 곳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미 질이 저하된 잔류매장량만 남아 있는 곳에서 채굴하는 지하자원사용자에게

지하자원소모에 대한 할인을 결정하는 것은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허가를 출원하는 정부에 의한다.

제6장 지하자원관련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무

제49조(지하자원관련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무) 본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위법이다.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위법자, 또는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하자원 사용절차의 위배
- 지하자원의 비합법적 사용
- 지하자원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 자연환경과 지하자원보호 및 지하자원

사용과 관련된 안전규정에 대한 기준(규범, 규정)위반, 본 법의 위반

- 지질학적인 정보 및 기타 정보의 소유권 위반 또는 그러한 정보의 비밀유지 위반
- 유용광물산출지역에서 불법건물의 건설
-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자연환경,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 건물 설비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는데 실패
- 지하수측정을 위한 지하우물이나 지하조사, 그리고 측지학 표시의 파괴
-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비용지불의 실패
- 공공안전을 보증하는 상태로 일시적 폐쇄 또는 폐기된 시추공과 광산작업을 환원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일시적 폐쇄기간에 있는 시추공이나 광산작업 및 유용광물의 올바른 보존상태를 위한 필수요건을 만족시키는데 대한 실패

이상은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른 위법책임과 러시아연방의 법률 및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행정적 책임을 가진다.

그 밖에 지하자원사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도 법률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제50조(분쟁해결의 절차) 지하자원사용에 관한 분쟁은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그들의 권한에 따른 중재재판소나 법정에서 해결한다.

다음의 사항은 중재재판소나 법정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① 지하자원사용에 관한 재정적 및 재산관련분쟁과 기타 다른 분쟁

②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조기만료나 면허출원을 거부하는 결정을 포함해서 이 법률을 위반하는 정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

③ 본 법에 모순되는 공식기관들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불만

④ 자연환경, 지하자원에 대한 보존 및 사용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기준 및 본 법에 모순되는 작용을 하는 교묘한 기준(규범, 규제)에 대한 불만

제51조(원인적 피해의 보상) 부분적 또는 전면적 지하자원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상황발생 및 지하자원의 자연적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잘못을 하는 시민이나 공무원, 정부 행정기관, 조직체, 기업 등의 활동결과로서 지하자원사용자에게 유발된 어떠한 유해도 보상된다. 보상은 그 가치에 따라 기업, 단체, 기관에 의하거나 상응하는 예산에 따라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지불된다.

지하자원부지사용의 경우는 변경될 수 없으며, 어떤 유해에 대한 보상은 러시아연방이나 러시아연방 지역 · 주 · 자치구의 예산을 기부의 형태로 지불될 수 있다.

유해에 대한 보상의 금전적 형태는 관련지역의 동의에 따라 손상된 지하자원의 복구를 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유용광물보유지 부지위에 불법적인 건물건설이나 불법적인 지하자원사용은 불법사용기간중에 초래된 비용에 대한 보상없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

제7장 국제조약

제52조(국제조약) 만일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 보다 이전의 다른 규정을 정의하고 있어도 국제조약규정은 유효하다.

러시아연방공화국 대통령

○ 러시아연방공화국 지하자원법시행령(1992.2.21)

1. 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은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행된다.
2. 지하자원에 관한 RSFSR규범은 무효로 한다.
3.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 입법위원회는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최고회의에 의하여 제안된 본 법과 같은 맥락으로 러시아연방의 입법적 조항을 수반키 위한 제안을 제출한다.
4. 러시아연방은 :
   - 1992년 4월 1일 이전에 본 법에 맞게 기채택된 규범적 조항을 받아들이고, 미개발유용광물 광상의 변화에 대한 광업의 대차대조표조항을 포함한 본 법과 모순되는 다른 조항을 1년단위로 러시아연방부처와 주위원회로 하여금 검토케 한다.
   - 개발된 각 광상의 지하자원사용권에 대한 정기지불의 특정비율을 정하기전에 모든 형태의 유용광물에 대한 지불율은 일시 최소비율로 정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광산기업으로 부터의 지불은 1992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적당한 예산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한다.
5. 러시아연방의 생태 및 천연자원부의 지질광물자원위원회는 지하자원재정관리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자원사용의 허가증발급에 관한 법률초안을 준비하고, 1992년 3월 1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초안을 제출한다.
   - 지하자원의 현재 사용자들은 1992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증을 받도록 책임진다.
6.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산하의 생태 및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위원회 및 공화국 자문위원회의 조세, 가격, 예산 계획위원회는 1992년 2월 25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광물원료지의 대체에 대한 국가의 비예산자금의 초안을 제출한다.

러시아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북한법제분석 96-1 北韓의 地下資源法制

1996년 5월 25일 印刷
1996년 5월 31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값 4,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